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결과 공개토론회

■ 일시 : 2005년 11월 24일 목요일 15:00

■ 장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최 : (재)서울복지재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모시는 글

오늘날 빈곤, 질병, 소외, 고용 그리고 부양의 책임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시민들도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욕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는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자치구별 복지수요분석을 통하여 다층적 안전망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서울복지재단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바랍니다.

2005년 11월

(재)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박미석

행 사 일 정

14:30~15:00	등록
15:00~15:20	개회식
	개회사: 박미석(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말: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5:20~15:50	주제발표
	주 제: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 조사결과
	발 표: 조권중(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5:50~16:00	회의장 정리 및 휴식
16:00~17:00	지명토론
	사 회: 한형수(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예자(서울시 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문진영(서강대 신학대학원)
	이상은(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이상은(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오혜경(카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17:00~17:30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제1장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결과분석

제1장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o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의 특성 및 생활실대,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사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함.

2. 조사대상과 조사설계

1) 조사대상

-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최근 저소득층 복지정책 연구 추세를 반영하여 조사대상 저소득층을 소득 3분위 이하 계층으로 설정하였음.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서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불과함.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의 주요 목표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특성 확인을 위해 별도조사를 실시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조사

o 기초생활수급보장가구 설문조사 표본 수는 3,000가구임.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조사설계

조사대상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조사방법	·개별방문면접조사(리스트 조사)
표집틀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현황(서울시 제공)
표본크기	・3,000가구
표본추출방법	·구별 비례할당추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현황'에 근거하여 구별 할당 - 구별 실사지점은 기초수급가구가 많은 동을 우선 추출 - 리스트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대상자 컨택
조사기간	· 2005. 7. 15 ~ 8. 29
실사기관	·(주) 리서치 앤 리서치(R&R)

3) 저소득층 가구 조사

0 저소득층 가구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득 3분위 이하의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함.

<표 2> 저소득층 가구 조사설계

조사대상	·서울시 소득3분위 이하 가구
조사방법	· 개별방문면접조사
표집틀	・통계청 2004년 도시근로자가계조사 ・서울시 2004년 서울서베이
표본크기	· 7,000가구
표본추출방법	·구별 비례할당추출
표본오차	±1.2% (95% 신뢰수준)
조사기간	· 2005. 7. 15 ~ 9. 8
실사기관	·(주) 리서치 앤 리서치(R&R)

0 조사대상자 선정

- 소득 3분위 상한 설정 :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조사(통계청)」를 활용하여 서울시 소득 3분위 상한 212만원을 도출하였음.
- 가구원수 반영비율 설정 : 소득계층 분류시 필수적인 가구원수별 소득상한 설정을 위해, 「최저생계비 가구별 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3> 최저생계비 가구별 산정기준(서울, 2004)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3분위소득 상한	80	130	170	210	240	280	310

- 구별 할당 및 실사지점(동) 추출: 도시근로자 가구조사 자료에는 서울시 자치구별 소득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음. 현재 서울시 구별 소득분포(구간별 소득) 정보를 갖고 있는 자료는 「2004년 서울서베이」의 표본조사 자료임1). 서울서베이 자료는 소득이 '구간소득'으로 조사되었으므로, 3분위 상한 최근 4인가족 소득대인 199만원 미만 가구수를 구별로 추출하여 할당하였음.
- 구별 실사지점은 3분위 이하 가구가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음.

^{1) (「2004}년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20,0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자료임).

3. 조사내용

1) 조사설문지 구성과 내용

o 조사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가구 일반사항, 가구 소득 및 경제상태,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실태, 대상별 복지 서비스 욕구실태로 구성되어있음.

* SQ(Screen Question)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월평균 소비 및 소득	◦월평균 생활비(저축 제외) ◦월평균 총 소득	SQ1 SQ2
가구원수 및 가구형태	∘ 가구원수 ∘ 가구형태(가구구분)	SQ3 SQ4
응답자	· 응답자의 가구내 지위	SQ5

1. 가구 일반사항

1. 가구원 구성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가구원 관련 사항 (가구원별 기재)	∘ 가구주와의 관계 ∘ 동거여부 ∘ 만성질환 여부	∘ 성별 ∘ 학력 ∘ 취업상태	∘ 출생연도 ∘ 장애등급 ∘ 건강상태	1
가구형태	• 가구형태			1
범주별 가구원수	• 아동, 노인, 장애인 가	구원 분류 및 가구원수		2

2. 가구주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혼인상태	• 가구주의 현재 혼인상태	3
고용형태	•지난 1년간 가장 길었던 일자리의 고용형태	4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
	○현재 월평균 근로 및 자영소득	6
취업자인 경우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정보 경로	7
커브시 <u>는</u> 경투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	8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9
	◦ 창업지원 희망 여부	17
	•마지막 취업 시점	10
	•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1~12
	◦직업훈련 경험 유무 및 받지 않는 이유	13~13.1
미취업자인 경우	◦직업훈련 희망 여부	14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 내용 및 견해	15~15.2
	◦정부에서 제공하기 바라는 자활지원 프로그램	16
	◦창업지원 서비스 희망 여부	17
사회보장 관련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여부	18
	• 가구주 부친의 교육수준	19
빈곤 세습	• 가구주 유년의 경제적 생활수준	20
거제자 버린 미 반고	◦현재 생활의 어려움이 시작된 시점	21
경제적 변화 및 빈곤	◦생활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	22
원인 	• 향후 3년간 가구 경제수준 변화 예측	23

■. 가구 소득 및 경제상태

1. 경제상태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생활비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1
	◦최소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생활비 부족분 충당 방법	2 3
신용불량 및 체납	∘ 가구원의 신용불량자 경험 및 주 원인 ∘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 경험 및 기간	4~4.1 5~5.1
저축	◦월평균 저축액 ◦저축의 주된 목적	6 6.1

2. 가구소득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가구소득	○ 항목별 가구소득(소득유무, 유형, 총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정부보조금, 사회보험수급, 사적 지원, 기타	7

3. 자산과 부채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자산	◦부동산자산 유무 및 종류 ◦금융자산 유무 및 종류	8~8.1 9~9.1
부채	◦ 부채 유무 ◦ 부채의 유형, 총 부채액, 원인	10 10.1

Ⅲ. 생활실태

1. 주거 • 지역사회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주거 일반	∘ 거주기간 및 주택의 전용면적, 방수 ∘ 주거유형 및 지출액 ∘ 주거형태	1 2 3
주거환경	• 주거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점	4
정부 지원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사항	5
지역사회	 지역사회 선택 이유 주변 생활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도로상태,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시설, 교육환경, 직장과의 거리 및 편리수준, 공원・녹지, 치안・방범, 이웃관계, 생활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전반적 만족도 이사 횟수 지역구 복지서비스 중점분야에 대한 욕구 	6 7 8 9

2. 건강 • 의료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의료기관 이용	○3개월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비용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선택 이유 ○보건소 이용 서비스 종류 ○주 이용 의료기관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비용상 이용못한 경험 여부	10~10.1 11, 12 11.1 13~13.1 14
의료보조기구 이용	∘의료보조기구 구입 및 임대 경험 및 소요비용	1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형태 ◦ 건강보험 이용상 문제점 ◦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	16 16.1 16.2
전부 지원	· 우선적으로 바라는 의료지원 서비스	17

3. 여가 • 문화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여가 및 문화생활	• 항목별 여가 및 문화생활 이용 및 필요여부	18
정보・인터넷	◦컴퓨터 보유 상태 ◦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19 19.1~19.1-1

제4장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스바시자본 . 1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복지서비스 이용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 만족도, 제공기관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 ∘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1 2 5
복지서비스 요구	◦서비스 유형별 필요정도 ◦가장 필요한 서비스	3 4
기초생활보장제도		6 6.1 6.2 6.3 6.4~6.5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인지여부, 경로, 이용경험 및 횟수 ○시설유형별 이용만족도,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복지시설 욕구(가장 필요한 시설)	7 8 9
복지관련 인식	∘ 복지지출 우선순위 ○ 저소득층 자활 요구	10 11
비공식/공식 지원	・가족문제 상의 대상・비상시 목돈대출 대상・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접촉빈도, 도움정도	12 13 14~14.1

제5장 대상별 복지서비스

1. 18세 0하 자녀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복지서비스 이용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 만족도, 제공기관 ∘가장 필요한 서비스	1 2
교육	◦월평균 사교육비 ◦기대 교육수준	3 4
미취학자녀 보육	○ 주보육제공자 ○ 이용 보육시설 유형 ○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 보육시설 선택 이유 ○ 보육 비용 지불 유무 / 액수 ○ 희망보육시설 유형 / 이용시간 ○ 보육시설 이용 장애요인 ○ 자녀양육 어려움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5 5.1 5.2 5.3 6 7~7.1 8 9 10
초등학교자녀 양육	○ 방과후 활동 ○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 ○ 자녀양육의 어려움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11 13 14 12
중고등생자녀 양육	○ 정규학교 여부 ○ 학교중퇴 이유 및 학교중퇴 후 대안 ○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 ○ 자녀양육의 어려움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15 15.1~15.2 13 14 16

2. 만 65세 이상 노인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서비스 유형별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 및 만족도, 제공기관 ◦가장 필요한 서비스	17 18 19
부양	 • 부양의 어려움 • 일상생활 수행능력 • 부양 전담자 유무 및 전담 주체 • 부양 비용 • 가족의 부담(어려움) 	20 21 22~22.1 23 24
취업	∘취업여부 및 고용형태 ∘미취업 이유 ∘취업 희망 여부	25~25.1 25.2 26
지원	∘희망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시설 이용 비용부담 및 지원 희망 기간	27~27.2 27.3~27.4

3. 장애인/만성질환자

중지표	세부지표	문항번호
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서비스 유형별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 및 만족도, 제공기관 ◦가장 필요한 서비스	28 29 30
도움 관련	일상생활 수행능력도움 전담자 유무 및 전담 주체도움 비용가족의 부담(어려움)	31 32~32.1 33 34
취업	◦취업여부 및 고용형태 ◦미취업 이유 ◦취업 희망 여부	35~35.1 35.2 36
지원	∘희망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시설 이용 비용부담 및 지원 희망 기간	37~37.2 37.3~37.4

제2절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결과분석

- 1. 가구 및 인구 특성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1) 가구 및 가구주 특성
- o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저학력, 만성질환으로 노동능력이 취약한 여성노인과 40-50대의 남성 장애인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남성 가구주 44.5%, 여성 가구주 55.5%임
 - 가구주 연령은 60대 이상이 52.4%로 과반수를 넘음.
 - 가구주 학력은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58.3%임.
 - 가구주의 33.4%가 장애인임.
 - 가구주의 45.8%가 만성질환 상태에 있음. 가구주의 78.9%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않음.
- 0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 모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가 많음
 - 일반가구 42.6%, 단독가구가 42%, 모자가구 10%, 부자가구 2.6%, 소년소녀가장 0.6%임.
- 0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원 복지수요 분야는 장애인 복지 및 노인복지에 집중되어있음.
 -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53.2%가 장애인/만성질환 가구원이 있음. 노인이 있는 가구는 51.9%,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3.2%임. 18세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26.3%임.

<표 4>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주의 인구특성

단위: 명, %

구 분	L	<u>+</u>	0	Ħ	계		
一	응답자수	백분율	응답자수	백분율	응답자수	백분율	
전 체	1,300	44.5	1,623	55.5	2,923	100.0	
연령별							
20대 미만	10	0.8	15	0.9	25	0.9	
20대	25	1.9	23	1.4	48	1.6	
30대	111	8.5	115	7.1	226	7.7	
40대	332	25.5	286	17.6	618	21.1	
50대	274	21.1	199	12.3	473	16.2	
60~64세	122	9.4	149	9.2	271	9.3	
65~74세	252	19.4	436	26.9	688	23.5	
75세 이상	174	13.4	400	24.6	574	19.6	
혼인유형별							
미혼	241	18.5	148	9.1	389	13.3	
기혼	559	43.0	122	7.5	681	23.3	
이혼	194	14.9	342	21.1	536	18.3	
사별	183	14.1	942	58.0	1125	38.5	
별거	45	3.5	56	3.5	101	3.5	
동거	78	6.0	13	0.8	91	3.1	
학력별							
무학	221	17.0	625	38.6	846	28.9	
초등학교	412	31.7	445	27.4	857	29.4	
중학교	282	21.7	228	14.0	510	17.4	
고등학교	303	23.3	286	17.6	589	20.2	
대학교 이상	82	6.3	39	2.4	121	4.1	
취업유무별							
취업	259	19.9	328	20.2	587	20.1	
미취업	1041	80.1	1295	79.8	2336	79.9	

<표 5>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주의 장애 및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남		(0‡		계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전 체	1,300	44.5	1,623	55.5	2,923	100.0	
건강상태							
매우좋지않음	460	35.4	510	31.4	970	33.2	
좋지않음	558	42.9	779	48.0	1,337	45.7	
보통	168	12.9	193	11.9	361	12.4	
좋음	98	7.5	126	7.8	224	7.7	
매우좋음	16	1.2	15	0.9	31	1.1	
장애							
등록	587	45.2	321	19.8	908	31.1	
미등록	36	2.8	30	1.8	66	2.3	
없음	677	52.0	1272	78.4	1949	66.6	
만성질환							
있음	630	48.5	708	43.6	1338	45.8	
없음	670	51.5	915	56.4	1585	54.2	

<표 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형태

단위: 명, %

구분	일반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단독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기타	계
남	793	22	71	375	7	32	1,300
	(61.0)	(1.7)	(5.5)	(28.8)	(0.5)	(2.5)	(100.0)
0‡	455 (28.0)	269 (16.6)	4 (0.2)	852 (52.5)	10 (0.6)	33 (2.0)	1,623 (100.0)
전 체	1,248	291	75	1227	17	65	2,923
	(42.6)	(10.0)	(2.6)	(42.0)	(0.6)	(2.2)	(100.0)

 χ^2 =517.657, p<.000

<표 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원 복지수요 분야

구분	F	<u></u>	0=		계		통계치
T世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중계시
전 체	1300	44.5	1623	55.5	2923	100.0	
아동							
있음	352	27.1	417	25.7	769	26.3	X2=517.657
없음	948	72.9	1206	74.3	2154	73.7	p=.000
평균	0.4	15	0.4	11	0.4	3	T=1.387
0 =	0		0	r 1	0.7		p=.398
노인							
있음	590	45.4	927	57.1	1517	51.9	X2=39.797
없음	710	54.6	696	42.9	1406	48.1	p=.000
평균	0.6	30	0.6	s0	0.6	1	T=0.860
9 끈	0.0	<i>J</i> Z	0.60		0.0	ı	p=.390
중증장애인							
있음	429	33.0	249	15.3	678	23.2	X2=126.337
없음	871	67.0	1374	84.7	2245	76.8	p=.000
평균	0.38		0.17		0.2	6	T=11.375
9 끈	0.0	30	0.1	1	0.2	U	p=.000
장애인/만성질환							
있음	734	56.5	821	50.6	1555	53.2	X2=10.011
없음	566	43.5	802	49.4	1368	46.8	p=.002
평균	0.7	72	0.5	57	0.64		T=6.289
일 년	0	13	0.0) (0.64		p=.000

2) 저소득층 가구

(1) 가구소득별 가구유형

- 가구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150%), 일반저소득가구로 구분함.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서 정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자가가격 또는 전월세보증금, 기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을 합하여 대리변수로 사용함.
 - 부동산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득액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이자율로 나누고, 금융자 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액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적금 평균 이자율로 나누어 추정함.
 - 이 기준 적용결과 저소득층 7,000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7%,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가구 14.5%, 차상위계층가구 4.2%, 차차상위계층가구 9.6%, 일반저소득가구 64.7%로 나타났음.

<표 8> 저소득층 조사대상가구의 소득분위별·가구유형별 비중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소득 1분위	2,378	34.62
, = = o	소득 2분위	1,458	21.23
소득분위	소득 3분위	1,496	21.78
	소득 4분위	1,536	22.3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483	7.03
	최저생계이하 비수급가구	993	14.46
가구유형	차상위계층	290	4.22
	차차상위계층	659	9.60
	일반저소득가구	4,443	64.69
	전 체	6,868	100.00

주 : 1)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 미만.

2) 차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150% 미만.

(2) 가구 및 가구주 특성

- 0 저소득층 가구주의 인구특성은 가구소득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가구는 남성 가구주 51.4%, 여성 가구주 48.6%임. 60세이상 노인가구주는 63.1%임. 학력수준은 62%가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임.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 가구주의 인구특성은 기초수급가구주의 인구특성과 비슷함. 다만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비율이 각각 7.4%, 29.2%로 나타나 기초수급가구주의 33.4%, 45.8%에 비해 낮음.
 -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인구특성은 최저생계이하 비수급가구주에 비해 여성 및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가구주 비율이 낮아짐. 반면 교육수준은 높아짐. 그러나 전체가구주의 약 1/4은 건강상태 좋지 않음. 차상위계층 가

구주의 성비는 남성 66.4%, 여성 33.4%임. 연령은 30-40-50대의 장년이 63.8%, 60세이상 노인이 30.7%임. 고 등학교이상 졸업자가 56.2%임.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비율은 각각 3.8%, 7.2%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주가 23.8%임.

- 차차상위계층 가구주의 인구특성은 차상위계층 가구주에 비해 여성, 노인 가구주 비율이 적어지고, 학력수준은 약간 높음. 차차상위계층 가구주 성비는 남성 71.9%, 여성 28.1%임. 연령은 30-50대가 71.5%, 60대 이상이 22.1%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가 61.5%임.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는 각각 4.2%, 5%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주는 15.8%임.
- 일반저소득가구주는 차차상위계층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 비율은 적으나, 연령대는 비슷함. 학력수준은 높아지며,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약 3배 높음. 일반저소득가구주의 성비는 남성 84.1%, 여성 15.9% 임. 연령은 30-40-50대가 72.6%, 60대이상이 23.3%임. 대학교이상 졸업자 17.3%를 포함해 고등학교이상 학력 자가 70.5%임. 장애 및 만성질환자는 각각 2.1%, 4.6%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구주는 12.7%임.
- o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수요 분야는 가구소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동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듬.
 -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는 22.5%, 노인이 있는 가구는 61.5%,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3.5%, 장애인/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28.4%임
 - 차상위계층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는 41.7%, 노인이 있는 가구는 37.2%,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3.1%, 장애인/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19.7%임
 - 차차상위계층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는 39.3%, 노인이 있는 가구는 17.5%,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8%, 장애인/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12.0%임
 - 일반저소득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는 43.7%, 노인이 있는 가구는 18.5%,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3%, 장애인/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9.7%임.

단위: 명, %

 구 분	수급;	가구	최저생기 비수급		차상위	·l계층	차차	상위	일반자	소득	겨 	
TE	응답자 수	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전 체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100.0
성별 남자 여자	179 304	37.1 62.9	510 483	51.4 48.6	193 97	66.6 33.4	474 185	71.9 28.1	3,735 708	84.1 15.9	5,091 1,777	74.1 25.9
연령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74세 75세 이상	3 2 26 54 36 43 149	0.6 0.4 5.4 11.2 7.5 8.9 30.8 35.2	3 18 96 128 122 108 298 220	0.3 1.8 9.7 12.9 12.3 10.9 30.0 22.2	- 16 64 70 51 25 47	5.5 22.1 24.1 17.6 8.6 16.2 5.9	1 41 160 188 123 80 50	0.2 6.2 24.3 28.5 18.7 12.1 7.6 2.4	4 183 1,087 1,279 858 381 483 168	0.1 4.1 24.5 28.8 19.3 8.6 10.9 3.8	11 260 1,433 1,719 1,190 637 1,027 591	0.2 3.8 20.9 25.0 17.3 9.3 15.0 8.6
혼인유형별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별거 동거	40 112 51 268 11	8.3 23.2 10.6 55.5 2.3 0.2	58 450 53 398 27 7	5.8 45.3 5.3 40.1 2.7 0.7	26 178 15 57 10 4	9.0 61.4 5.2 19.7 3.4 1.4	60 431 53 96 18	9.1 65.4 8.0 14.6 2.7 0.2	388 3,479 135 322 59 60	8.7 78.3 3.0 7.2 1.3 1.4	572 4,650 307 1,141 125 73	8.3 67.7 4.5 16.6 1.8
학력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174 172 59 73 5	36.0 35.6 12.2 15.1 1.0	288 328 131 213 33	29.0 33.0 13.2 21.5 3.3	30 44 53 146 17	10.3 15.2 18.3 50.3 5.9	41 107 106 363 42	6.2 16.2 16.1 55.1 6.4	201 574 537 2,363 768	4.5 12.9 12.1 53.2 17.3	734 1,225 886 3,158 865	10.7 17.8 12.9 46.0 12.5
취업유무별 취업 미취업	119 364	24.6 75.4	584 409	58.8 41.2	253 37	87.2 12.8	599 60	90.9	3,968 475	89.3 10.7	5,523 1345	80.4 19.6

<표 10> 저소득층 가구주의 장애 및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5	셈
T E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전 체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100.0
건강상태												
교 (교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89 227 108 58 1	18.4 47.0 22.4 12.0 0.2	115 347 275 228 28	11.6 34.9 27.7 23.0 2.8	9 60 91 104 26	3.1 20.7 31.4 35.9 9.0	14 90 188 310 57	2.1 13.7 28.5 47.0 8.6	62 500 1,104 2,228 549	1.4 11.3 24.8 50.1 12.4	289 1,224 1,766 2,928 661	4.2 17.8 25.7 42.6 9.6
장애 등록 미등록 없음	77 12 394	15.9 2.5 81.6	52 21 920	5.3 2.1 92.6	10 1 279	3.5 0.3 96.2	24 4 631	3.6 0.6 95.8	81 14 4,348	1.8 0.3 97.9	244 52 6,572	3.5 0.8 95.7
만성질환 있음 없음 없음	141 342	29.2 70.8	177 816	17.8 82.2	21 269	7.2 92.8	33 626	5.0 95.0	204 4,239	4.6 95.4	576 6,292	8.4 91.6

<표 11>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 복지수요 분야

단위: 명, %

														11. 0, 70
그ㅂ	수급	가구		계 이하 급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	 상위	일반자	소득	7	#	투괴	 +
구분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응답 자수	비율	통계치	
전 체	483	7.0	993	14.5	290	4.2	659	9.6	4,443	64.7	6,868	100.0	100.0	
아동 있음 없음 없음	87 396	18.0 82.0	223 770	22.5 77.5	121 169	41.7 58.3	259 400	39.3 60.7	1,941 2,502			38.3 61.7	X2=24: p=.(
평균	0.	26	0	.38	0.	73	0.6	65	0.7	74	0.	65	F=58. p=.0	
노인 있음 없음	347 136	71.8 28.2	611 382	61.5 38.5	108 182	37.2 62.8	115 544	17.5 82.5	1,159 3,284		2,340 4,528		X2=84	
평균	0.	84	0	.79	0.4	46	0.2	22	0.3	36	0.	45	F=151 p=.0	
중증장애인 있음 없음	52 431	10.8 89.2	35 958	3.5 96.5	9 281	3.1 96.9	12 647	1.8 98.2	59 4,384	1.3 98.7	167 6,701	2.4 97.6	X2=170 p=.0	
평균	0.	120	0.	004	0.0	03	0.0	02	0.0	01	0.0	003	F=42. p=.0	
장애인/만성질환 있음 없음	194 289	40.2 59.8	282 711	28.4 71.6	57 233	19.7 80.3	79 580	12.0 88.0	432 4,011	9.7 90.3	1,044 5,824		X2=480 p=.0	
평균	0.	45	0	.33	0.2	24	0.1	5	0.1	2	0.	18	F=91. p=.0	

2.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 경제활동

- o 취업 및 고용상태
- 기초생활수급가구주 및 가구원의 대부분이 미취업 상태이며, 취업자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일용직, 임시직 종 사자임. 미취업자의 대부분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기초수급가구주의 대부분이 건강,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임.
- 가구주의 80%가 미취업자이며, 가구원 취업률도 3.9%에 불과함.
- 가구주의 자활지원프로그램 참여율은 3.1%임.
- 월평균임금수준은 남성 55.6만원, 여성 49.7만원으로 여성 가구주의 임금소득수준이 낮음.
- 미취업 가구주의 3.9%만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표 12>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고용형태

단위: 명, (%)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20대 미만	1 (4.0)	1 (4.0)	4 (16.0)	1 (4.0)			18 (72.0)	25 (0.9)
20대	4 (8.3)	11 (22.9)	12 (25.0)	1 (2.1)	1 (2.1)	1 (2.1)	18 (37.5)	48 (1.6)
30대	4 (1.8)	26 (11.5)	48 (21.2)	17 (7.5)	3 (1.3)	1 (0.4)	127 (56.2)	226 (7.7)
40대	11 (1.8)	58 (9.4)	127 (20.6)	35 (5.7)	7 (1.1)	1 (0.2)	379 (61.3)	618 (21.1)
50대	9 (1.9)	22 (4.7)	49 (10.4)	25 (5.3)	6 (1.3)	2 (0.4)	360 (76.1)	473 (16.2)
60대 이상	5 (0.3)	14 (0.9)	35 (2.3)	29 (1.9)	10 (0.7)	6 (0.4)	1,434 (93.5)	1,533 (52.4)
전 체	34 (1.2)	132 (4.5)	275 (9.4)	108 (3.7)	27 (0.9)	11 (0.4)	2,336 (79.9)	2,923 (100.0)

 X^2 =516.716, p<0.0001

<표 13>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성별 가구주 취업상태

항목	평균 취업률(%)	평균 임금	평균 근무시간	총응답자수
남성 가구주	19.9	55.6만원	37.0시간	250명
여성 가구주	20.2	49.7만원	34.0시간	311명
가구주	20.1	52.3만원	35.3시간	561명

o 취업정보 취득 및 직업훈련 희망

- 기초수급가구주의 대부분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해 취업정보를 입수하며, 직업훈련을 희망하지 않음. 가구주의 취업정보 취득경로는 직접 또는 개인 네트워크이 42.1%임. 공공직업안내소는 17.4%임. 직업훈련 희망자는 6.1%임.

<표 14> 기초생활수급가구 취업가구주의 취업정보 입수방법

항 목	응답자수(명)	비율(%)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10	1.7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222	35.8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100	17.4
유료민간직업안내소를 통해서	7	1.2
무료민간직업안내소를 통해서	19	3.3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41	7.1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142	24.7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5	0.9
채용 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28	4.9
기타	2	0.3
전 체	576	100.0

<표 15> 기초생활수급가구 미취업 가구주의 직업훈련참여 희망여부

단위: 명, (%)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계	
20대 미만	3 (16.7)	15 (83.3)	18 (0.8)	
20대	5 (27.8)	13 (72.2)	18 (0.8)	
30대	33 (26.8)	90 (73.2)	123 (5.3)	
40대	46 (12.5)	321 (87.5)	367 (15.9)	
50대	31 (8.7)	324 (91.3)	355 (15.4)	
60대 이상	23 (1.6)	1,399 (98.4)	1,422 (61.7)	
전 체	141 (6.1)	2,162 (93.9)	2,303 (100.0)	

 x^2 =190.594, p<0.0001

(2) 경제상태

0 가구소득 및 지출

- 월평균 소득은 49.1만원, 지출은 52.9만원으로 나타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비용은 월평균 83.3만원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23.4%, 가족·친지·종교·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적 지원을 받은 가구는 15.4%임. 평균 정부보조금은 35.6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6.1만원임.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소득 중에 정부보조금은 80.4%, 근로소득은 14.3%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지출에서 식료품비 42.2%, 주거비 17.7%, 광열수도비가 12.6%를 차지함. 부족한 생활비는 따로 사는 친척·친지의 지원(33.4%), 빚(19.0%), 부업·아르바이트(16.7%)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당초 설문문항에 없어 기타에 기입한 '절약'이 18.7%를 차지하였음.

<표 1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지출 및 필요비용

단위 : 명, %

7 🖽	소	득	지	출	필요비용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응답자수	비 율	응답자수	비율	
30만원 이하	592	20.5	507	17.4	60	2.1	
30만원 초과~50만원	1,254	43.5	1,258	43.0	809	27.7	
50만원 초과~70만원	553	19.2	570	19.5	668	22.9	
70만원 초과~90만원	280	9.7	321	11.0	355	12.1	
90만원 초과	205	7.1	267	9.1	1,030	35.2	
전 체	2,884	100.0	2,923	100.0	2,922	100.0	
평 균	49.1만원		52.8	만원	83.3만원		

<표 1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 유무

구 분	있	010	없	0 0	계		
	응답자수	비 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근로소득	684	23.4	2,239	76.6	2,923	100.0	
사업소득	23	0.8	2,900	99.2	2,923	100.0	
금융소득	3	0.1	2,920	99.9	2,923	100.0	
부동산소득	3	0.1	2,920	99.9	2,923	100.0	
정부보조금	2,923	100.0	_	_	2,923	100.0	
사회보험 수급	97	3.3	2,826	96.7	2,923	100.0	
사적 지원	450	15.4	2,473	84.6	2,923	100.0	
기 타	31	1.1	2,892	98.9	2,923	100.0	

<표 18>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내역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평균 금액	평균 비율
근로소득	679	46.1	14.3
사업소득	22	61.5	0.5
금융소득	3	17.3	0.0
부동산소득	3	58.1	0.1
정부보조금	2,836	35.6	80.4
사회보험 수급	92	17.7	1.1
사적 지원	449	15.6	4.7
기 타	31	33.6	0.4
전 체	2,916	49.1	100.0

<표 19>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지출내역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평균 금액	평균 비율
식료품비	2,923	21.6	42.2
주거비	2,923	8.5	17.6
광열수도비	2,923	6.1	12.6
가구가전비	2,923	0.8	1.5
피복신발비	2,923	1.6	2.8
보건의료비	2,921	3.8	6.6
교육비	2,919	2.8	3.2
교양오락비	2,923	0.4	0.6
교통통신비	2,923	4.6	8.2
기 타	2,923	2.6	4.6
전 체	2,923	52.8	100.0

<표 20>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족한 생활비 충당방법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부업 /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458	16.7
따로 사는 친척/친지의 지원으로	916	33.4
빚을 내어서	522	19.0
종교·사회기관의 도움으로	237	8.6
절 약	513	18.7
기 타	96	3.5
전 체	2,742	100.0

o 저축 및 신용상태

- 저축을 전혀 못하는 가구가 92.5%임. 저축을 하는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은 1만원임.
- 가구의 16.8%가 신용불량경험 가구원이 있음. 신용불량원인의 67.8%가 생활비, 사업자금 충당임.
- 지난 1년간 제세공과금 체납경험 가구는 16.7%임.

<표 21>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월평균 저축액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평 균
0 원	2,705	92.5	
5만원 이하	69	2.4	
5만원 초과~10만원	77	2.6	1.0만원
10만원 초과~20만원	44	1.5	1.0인권
20만원 초과	28	1.0	
전 체	2,923	100.0	

<표 22>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신용상태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평 균
신용불량 경험	있 음	490	16.8	
가구원 유무	없 음	2,433	83.2	_
772 #7	전 체	2,923	100.0	
시요브라 겨침	1 명	399	85.8	
신용불량 경험 가구원수	2명 이상	66	14.2	1.14명
기구선구	전 체	465	100.0	
	생활비 충당	196	40.4	
	의료비 충당	65	13.4	
┃ 신용불량 원인	보 증	48	9.9	
선충골당 전인	사업자금 충당	133	27.4	_
	기 타	43	8.9	
	전 체	485	100.0	

<표 23>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지난 1년간 제세공과금 체납

구	I	응답자수	비 율
TILUI 그 기그	있 음	489	16.7
제세공과금 체납 유무	없 음	2,434	83.3
	전 체	2,923	100.0
	3개월 미만	299	64.6
	3개월~6개월 미만	114	24.6
제세공과금 체납기간	6개월~1년 미만	40	8.6
제답기단	1년 이상	10	2.2
	전 체	463	100.0

o 자산 및 부채

- 부동산자산이 있는 가구는 1.5%,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3.4%로 나타남.
- 가구의 35.5%가 부채가 있음. 가구당 부채규모는 평균 594.9만원임. 부채의 원인은 생활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4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유무

단위 : 명, %

구 분	부동선	산자산	금융자산		
T E	응답자수	비 율	응답자수	비 율	
있 음	44	1.5	99	3.4	
없 음	2,878	98.5	2,815	96.6	
전 체	2,922	100.0	2,914	100.0	

<표 25>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채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평 균
있 음		1,037	35.5	
부채 유무	없 음	1,883	64.5	_
	전 체	2,920	100.0	
	0 원	1,883	64.8	
	500만원 이하	390	13.4	
부채액	500만원 초과~1천만원	233	8.0	594.9만원
구세씩	1천만원 초과~2천만원	178	6.1] 594.9인권
	2천만원 초과	224	7.7	
	Й	2,908	100.0	

<표 2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채 유형 및 원인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금융기관 부채(카드빚 포함)	574	40.8
	비금융기관 부채(회사에서 빌린 돈 등)	68	4.8
 부채 유형	개인적으로 빌린 돈(친척, 친지 등)	586	41.7
	사 채	108	7.7
	기 타	70	5.0
	전 체	1,406	100.0
	교육비(학자금 마련)	45	4.4
	의료비	178	17.2
	생활비	485	46.9
 부채 원인	주택관련 자금	120	11.6
구제 권인 	사업자금 마련	137	13.2
	부채 상환	52	5.0
	기 타	18	1.7
	전 체	1,035	100.00

0 과거의 경제상태 및 미래전망

- 생활곤란시기가 부모대부터, 성장이후 내내가 47.4%, 10년 전부터가 35.2%로 나타나 빈곤의 세습 및 장기화 경향이 있음

생활곤란 이유는 질병·장애·사고가 51.5%로 가장 높았고,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 21.4%, 사업실패 15.2% 순으로 나타남.

- 향후 3년간 가구경제수준 변화전망에서는 거의 모든 가구가 변화없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음.

<표 2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생활곤란 시작시기 및 이유

단위 : 명, %

구	반	응답자수	비 율
	부모 때부터	512	17.5
	성장 이후 내내	875	29.9
	10년 전부터	1,029	35.2
생활곤란 시작시기	5-10년 전부터	291	10.0
경찰군인 시작시기 	3-5년 전부터	132	4.5
	1-3년 전부터	67	2.3
	어렵지 않음	16	0.5
	전 체	2,922	100.0
	사업실패	414	15.2
	좋은 일자리 못 얻음	581	21.4
	실 직	131	4.8
	빚	79	2.9
생활곤란 이유	질병 / 장애 / 사고	1,399	51.5
	게으름	39	1.4
	사별 / 이혼 / 별거	49	1.8
	기 타	23	0.8
	전 체	2,715	100.0

<표 28>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향후 3년간 가구경제수준 변화전망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더욱 악화	208	7.1
악 화	976	33.4
변화없이 지속	1,615	55.3
다소 호전	118	4.0
크게 호전	6	0.2
전 체	2,923	100.0

2) 저소득층 가구

(1) 경제활동

o 취업 및 고용상태

-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가구주의 41.2%가 미취업자이며, 자활/공공근로 취업자가 19.5%, 일용직 근로자가 19.2%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함.
-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45.8%가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음. 고용주/자영업 종사자가 20.3%, 상용직임금근 로자가 13.4%임. 자활/공공근로는 7.6%이며, 미취업자는 12.8%임.
- 차차상위계층 가구주의 41.7%가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음. 고용주/자영업 종사자 23.5%, 상용직 임금근로자 22.5%, 자활/공공근로는 3.2%이며, 미취업자는 9.1%임.
- 일반저소득가구주의 35.9%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임. 23.2%가 임시직, 일용직으로 일하는 가구주는 23.2%, 고용주/자영업종사자는 28.7%, 미취업자는 10.7%임.

<표 29> 저소득층 가구 가구주의 소득계층별 고용형태

단위: 명, (%)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미취업자	계
수급가구	3 (0.6)	17 (3.5)	47 (9.7)	43 (8.9)	6 (1.2)	3 (0.6)	364 (75.4)	483 (7.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40 (4.0)	73 (7.4)	191 (19.2)	194 (19.5)	85 (8.6)	1 (0.1)	409 (41.2)	993 (14.5)
차상위계층 -	39 (13.4)	61 (21.0)	72 (24.8)	22 (7.6)	59 (20.3)	_	37 (12.8)	290 (4.2)
차차상위	148 (22.5)	120 (18.2)	155 (23.5)	21 (3.2)	155 (23.5)	-	60 (9.1)	659 (9.6)
일반 저소득	1,593 (35.9)	531 (12.0)	498 (11.2)	61 (1.4)	1,276 (28.7)	9 (0.2)	475 (10.7)	4,443 (64.7)
전 체	1,823 (26.5)	802 (11.7)	963 (14.0)	341 (5.0)	1,581 (23.0)	13 (0.2)	1345 (19.6)	6,868 (100.0)

 $X^2=2740.311$, p<0.0001

o 취업정보 취득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가족/친구를 통해 구직을 하는 비율은 높아짐.

<표 30> 저소득층 가구 가구주의 소득계층별 구직정보처

단위: 명, (%)

	학교, 학원의 추천,소개	가족, 친구의 소개	공공 직업 안내소	유료민간 직업 안내소	무료민간 직업 안내소	신문, TV 등 구인 광고	직접 찾아다니 면서	인터넷 전산망	채용 /취업 박람회	기타	계
수급가구		39 (33.1)	19 (16.1)		3 (2.5)	3 (2.5)	47 (39.8)	1 (0.8)	6 (5.1)		118 (2.2)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7 (1.2)	248 (42.5)	66 (11.3)	9 (1.5)	11 (1.9)	28 (4.8)	198 (34.0)	6 (1.0)	9 (1.5)	1 (0.2)	583 (10.6)
차상위계층	11 (4.4)	108 (43.2)	18 (7.2)	8 (3.2)	6 (2.4)	16 (6.4)	75 (30.0)	4 (1.6)	4 (1.6)		250 (4.6)
차차상위	25 (4.2)	269 (45.3)	27 (4.5)	17 (2.9)	15 (2.5)	32 (5.4)	182 (30.6)	15 (2.5)	10 (1.7)	2 (0.3)	594 (10.9)
일반 저소득	258 (6.6)	1,863 (47.4)	135 (3.4)	86 (2.2)	62 (1.6)	265 (6.7)	1,084 (27.6)	68 (1.7)	105 (2.7)	3 (0.1)	3,929 (71.8)
전 체	301 (5.5)	2,527 (46.2)	265 (4.8)	120 (2.2)	97 (1.8)	344 (6.3)	1,586 (29.0)	94 (1.7)	134 (2.4)	6 (0.1)	5,474 (100.0)

 X^2 =191.110, p<0.0001

0 미취업가구주의 구직활동

- 최저생계이하 비수급가구의 미취업가구주 16.5%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기초수급가주구(3.9%)에 비해 구직활동율이 높음. 차상위계층 미취업가구주의 28.6%, 차차상위계층 미취업가구주의 14.3%, 일반저소득 미취업가구주의 11.5%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저소득층 미취업가구주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의 차별 때문에'가 45.6%,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가 33.8%, 일할 수 없는 상황이 11%임.

<표 31> 저소득층 가구 미취업 가구주의 소득계층별 구직활동여부

단위: 명, (%)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계
수급가구	18 (5.0)	342 (95.0)	360 (28.3)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65 (16.5)	328 (83.5)	393 (30.9)
차상위계층	10 (28.6)	25 (71.4)	35 (2.8)
차차상위	7 (14.3)	42 (85.7)	49 (3.9)
일반 저소득	50 (11.5)	383 (88.5)	433 (34.1)
전 체	150 (11.8)	1,120 (88.2)	1,270 (100.0)

X²=34.225, p<0.0001

<표 32> 저소득층 가구 미취업가구주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해서	기술 등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다른 구직결과/ 일자리를 기다림	집이나 나의여건 때문에	일할 생각이 없어서	일을 할수 없어서	Ä
수급가구	40 (11.8)	44 (13.0)	1 (0.3)	180 (53.3)		16 (4.7)	6 (1.8)	51 (15.1)	338 (30.5)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42 (12.9)	83 (25.5)	4 (1.2)	138 (42.3)	2 (0.6)	11 (3.4)	9 (2.8)	37 (11.3)	326 (29.4)
차상위계층	4 (16.7)	3 (12.5)		11 (45.8)		2 (8.3)	1 (4.2)	3 (12.5)	24 (2.2)
차차상위	6 (14.3)	6 (14.3)	1 (2.4)	15 (35.7)	2 (4.8)	2 (4.8)	4 (9.5)	6 (14.3)	42 (3.8)
일반 저소득	76 (20.1)	71 (18.7)	7 (1.8)	162 (42.7)	2 (0.5)	13 (3.4)	23 (6.1)	25 (6.6)	379 (34.2)
전 체	168 (15.1)	207 (18.7)	13 (1.2)	506 (45.6)	6 (0.5)	44 (4.0)	43 (3.9)	122 (11.0)	1,109 (100.0)

0 미취업가구주의 직업훈련희망 유무

- 저소득층 미취업가구주의 직업훈련희망율은 11.6%로 기초생활수급 미취업가구주 희망율 6.1%에 비해서는 많음.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의 미취업가구주의 14.8%, 차상위계층가구주의 14.7%, 차차상위계층가구주의 16.3%, 일반저소득가구주의 10.6%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함.

<표 33> 저소득층 가구 미취업 가구주의 소득계층별 직업교육 희망여부

단위: 명, (%)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계
수급가구	30 (8.4)	326 (91.6)	356 (28.2)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58 (14.8)	335 (85.2)	393 (31.1)
차상위계층	5 (14.7)	29 (85.3)	34 (2.7)
차차상위	8 (16.3)	41 (83.7)	49 (3.9)
일반 저소득	46 (10.6)	386 (89.4)	432 (34.2)
전 체	147 (11.6)	1,117 (88.4)	1,264 (100.0)

0 미취업가구주의 희망 자활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층 미취업가구주가 가장 바라는 자활지원사업은 공공근로/자활근로사업이 17.6%로 가장 많으며, 이어 취업알선사업을 15%가 희망함.

<표 34> 저소득층 가구 미취업 가구주의 희망하는 자활 프로그램

단위: 명, (%)

	필요 없음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개인 창업 지원	공동 창업 지원	자활 근로 (공공 근로)	재활 프로 그램	지역 봉사	기타	계
수급가구	209 (60.6)	34 (9.9)	10 (2.9)	12 (3.5)	15 (4.3)	49 (14.2)	6 (1.7)	8 (2.3)	2 (0.6)	345 (28.3)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195 (51.6)	61 (16.1)	20 (5.3)	16 (4.2)	1 (0.3)	75 (19.8)	6 (1.6)	4 (1.1)		378 (31.0)
차상위계층	12 (40.0)	5 (16.7)	1 (3.3)	5 (16.7)		7 (23.3)				30 (2.5)
차차상위	22 (45.8)	8 (16.7)	1 (2.1)	2 (4.2)		13 (27.1)	1 (2.1)	1 (2.1)		48 (3.9)
일반 저소득	235 (56.1)	68 (16.2)	9 (2.1)	13 (3.1)		74 (17.7)	12 (2.9)	7 (1.7)	1 (0.2)	419 (34.3)
전 체	673 (55.2)	176 (14.4)	41 (3.4)	48 (3.9)	16 (1.3)	218 (17.9)	25 (2.0)	20 (1.6)	3 (0.2)	1,220 (100.0)

0 창업지원 서비스 희망여부

- 저소득층가구주의 25.1%가 창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함. 차차상위계층 가구주의 30.1%가 창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어, 최저생계이하미수급가구주 22%, 차상위계층 27.2%, 일반저소득가구주 25.9%에 비해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5>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창업지원서비스 희망여부

단위: 명, (%)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계
수급가구	74(15.4)	407(84.6)	481(7.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218(22.0)	771(78.0)	989(14.5)
차상위계층	79(27.2)	211(72.8)	290(4.2)
차차상위	196(30.1)	455(69.9)	651(9.5)
일반 저소득	1,146(25.9)	3,275(74.1)	4,421(64.7)
전 체	1,713(25.1)	5,119(74.9)	6,832(100.0)

 X^2 =40.072, p<.0001

(2) 경제상태

o 가구소득

-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은 46.8만원으로 기초수급가구 49.1만원에 비해 낮음. 기초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1.7명,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 평균가구원가 2.33명임을 고려하면 비수급가구의 소득수준이 더 낮아짐.
- 차상위계층 월평균 가구소득은 98.9만원, 차차상위계층 가구는 112.3만원, 일반저소득가구 148.5만원임.

<표 36>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구 분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150만원	150만원 초과	Й	평균(만원)	평균 가구원수(명)
수급가구	356 (73.7)	98 (20.3)	25 (5.2)	4 (0.8)	483(100.0)	45.8	1.7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622 (63.7)	319 (32.7)	34 (3.5)	1 (0.1)	976(100.0)	46.8	2.33
차상위계층	46 (15.9)	132 (45.5)	104 (35.9)	8 (2.8)	290(100.0)	98.9	3.07
차차상위	81 (12.3)	243 (36.9)	231 (35.0)	104 (15.8)	659(100.0)	112.3	2.86
일반 저소득	243 (5.5)	885 (20.0)	1,164 (26.2)	2,145 (48.3)	4,437(100.0)	148.5	3.3
전 체	1,348 (19.7)	1,677 (24.5)	1,558 (22.8)	2,262 (33.05)	6,845(100.0)	120.9	2.65

 $[\]mathbf{x}^2 = 3554.1524$, p<0.0001

o 가구지출

- 저소득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액은 평균 104.6만원임. 기초수급가구와 기초생계이하 비수급가구의 가구지출액은 52.3만원으로 기초수급가구 52.8만원에 비해 오히려 약간 낮음. 차상위계층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91.5만원, 차 차상위계층은 99.8만원, 일반저소득가구는 124.3만원임.

<표 37>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구지출

단위: 명, (%)

구 분	50만원 이하	51만원~100만원	101~150만원	150만원 초과	계	평균(만원)
수급가구	358 (74.1)	98 (20.3)	24 (5.0)	3 (0.6)	483(100.0)	45.6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618 (62.2)	308 (31.0)	60 (6.0)	7 (0.7)	993(100.0)	52.3
차상위계층	48 (16.5)	150 (51.7)	84 (29.0)	8 (2.8)	290(100.0)	91.5
차차상위	99 (15.0)	295 (44.7)	202 (30.7)	63 (9.6)	659(100.0)	99.8
일반 저소득	395 (8.9)	1,304 (29.3)	1,448 (32.6)	1,296 (29.2)	4,443(100.0)	124.3
전 체	1,518 (22.1)	2,155 (31.4)	1,818 (26.5)	1,377 (20.0)	6,868(100.0)	104.6

 $[\]mathbf{x}^2 = 2634.3010, p < 0.0001$

o 가구 지출내역

- 저소득층 가구지출액의 약 40%가 식료품비로 나감. 일반저소득가구를 제외하고는 주거비 지출액이 약 10%를 차지함.

<표 38> 저소득층 가구의 지출내역

단위 : 명, 만원, %

구	분	응답자수	평균 금액	평균 비율
	식료품비	483	19.2	45.2
	주거비	483	6.1	12.9
	광열수도비	483	5.2	12.6
	가구가전비	483	1.0	2.2
	피복신발비	483	1.6	3.3
수급가구	보건의료비	483	3.9	8.3
	교육비	483	2.1	2.2
	교양오락비	483	0.6	1.0
	교통통신비	483	4.0	8.2
	기 타	483	2.0	4.2
	전 체	483	45.6	100.0
	식료품비	993	22.3	44.8
	주거비	993	5.3	9.6
	광열수도비	993	6.0	12.9
	가구가전비	992	0.9	1.6
	피복신발비	993	1.7	3.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보건의료비	993	4.8	10.2
미구납기구	교육비	990	3.0	3.3
	교양오락비	993	0.7	1.1
	교통통신비	993	5.5	9.8
	기 타	993	2.1	3.6
	전 체	993	52.3	100.0
	식료품비	290	35.1	39.7
	주거비	290	8.7	10.1
	광열수도비	290	8.3	9.5
	가구가전비	290	2.0	2.1
	피복신발비	290	3.8	4.0
차상위계층	보건의료비	290	7.2	8.2
	교육비	290	9.0	8.0
	교양오락비	290	2.5	2.5
	교통통신비	290	9.5	10.2
	기타	290	5.2	5.5
	전 체	290	91.5	100.0

7	분	응답자수	평균 금액	평균 비율
	식료품비	659	38.2	39.3
	주거비	659	9.5	9.7
	광열수도비	659	8.9	9.5
	가구가전비	659	2.2	2.3
	피복신발비	659	3.9	4.0
차차상위	보건의료비	658	7.3	8.0
	교육비	656	11.0	8.5
	교양오락비	659	2.8	2.7
	교통통신비	659	10.6	10.8
	기 타	659	5.4	5.2
	전 체	659	99.8	100.0
	식료품비	4,443	48.9	41.0
	주거비	4,443	3.2	2.8
	광열수도비	4,443	11.0	9.7
	가구가전비	4,443	3.3	2.6
	피복신발비	4,443	6.4	5.1
일반저소득	보건의료비	4,442	9.0	7.9
	교육비	4,380	17.7	11.3
	교양오락비	4,443	5.3	4.0
	교통통신비	4,443	13.8	11.3
	기 타	4,443	6.0	4.7
	전 체	4,443	124.3	100.0
	식료품비	6,868	41.4	41.5
	주거비	6,868	4.6	5.4
	광열수도비	6,868	9.5	10.3
	가구가전비	6,867	2.6	2.4
	피복신발비	6,868	5.1	4.5
전체 저소득층 가구	보건의료비	6,866	7.8	8.3
シロエ	교육비	6,799	13.5	9.1
	교양오락비	6,868	4.0	3.2
	교통통신비	6,868	11.4	10.8
	기타	6,868	5.1	4.6
	전 체	6,868	104.6	100.0

() 저축

- 저소득층가구의 약 50.9%가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음.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율 및 저축액이 커지고 있어, 일반저소득가구의 경우 63%가 월평균 21.2만원을 저축하고 있음.

<표 39>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

단위 : 명, %

구 분	0 원	15만원 이하	15만원 초과 ~30만원	30만원 초과	À	평 균 (만원)
수급가구	416 (86.1)	51 (10.6)	14 (2.9)	2 (0.4)	483(100.0)	1.7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885 (89.2)	73 (7.4)	24 (2.4)	10 (1.0)	992(100.0)	1.6
차상위계층	198 (68.3)	41 (14.1)	45 (15.5)	6 (2.1)	290(100.0)	6.0
차차상위	351 (53.3)	104 (15.8)	130 (19.7)	74 (11.2)	659(100.0)	11.5
일반 저소득	1,644 (37.0)	538 (12.1)	1,167 (26.3)	1,094 (24.6)	4,443(100.0)	21.2
전 체	3,494 (50.9)	807 (11.7)	1,380 (20.1)	1,186 (17.3)	6,867(100.0)	15.4

 $[\]mathbf{x}^2 = 1354.1893, p < 0.0001$

o 신용상태

- 가구원중 신용불량경험이 있는 가구는 차상위계층가구가 21.4%로 가장 많음. 이어 차차상위계층가구가 17.9%, 최저생계이하 비수급가구가 13.4%, 일반저소득가구가 7.2%임.

<표 40> 저소득층 가구의 신용불량 경험 가구원 유무

구 분	있 음	없 음	계
수급가구	35 (7.2)	448 (92.8)	483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133 (13.4)	860 (86.6)	993 (100.0)
차상위계층	62 (21.4)	228 (78.6)	290 (100.0)
차차상위	118 (17.9)	541 (82.1)	659 (100.0)
일반 저소득	318 (7.2)	4,125 (92.8)	4,443 (100.0)
전 체	666 (9.7)	6,202 (90.3)	6,868 (100.0)

 $[\]mathbf{x}^2 = 147.4441, p < 0.0001$

o 자산

- 부동산 자산의 경우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 7.4%, 차상위계층의 11%, 차차상위계층의 11,4%가 있음. 저소 득가구는 53.7%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음.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주택임.
- 금융자산의 경우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 11.9%, 차상위계층가구의 21%, 차차상위계층가구의 33.2%, 일반저소득가구의 55.5%가 있음.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은행예금임.

<표 41> 저소득층 가구의 부동산자산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있 음	없 음	계
수급가구	25 (5.2)	458 (94.8)	483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73 (7.4)	920 (92.6)	993 (100.0)
차상위계층	32 (11.0)	258 (89.0)	290 (100.0)
차차상위	75 (11.4)	584 (88.6)	659 (100.0)
일반 저소득	2,385 (53.7)	2,058 (46.3)	4,443 (100.0)
전 체	2,590 (37.7)	4,278 (62.3)	6,868 (100.0)

 $[\]mathbf{x}^2 = 1371.9801, p < 0.0001$

<표 42> 저소득층 가구의 금융자산 유무

단위:명,%

구 분	있 음	없 음	계
수급가구	38 (7.9)	445 (92.1)	483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118 (11.9)	875 (88.1)	993 (100.0)
차상위계층	61 (21.0)	229 (79.0)	290 (100.0)
차차상위	219 (33.2)	440 (66.8)	659 (100.0)
일반 저소득	2,466 (55.5)	1,976 (44.5)	4,442 (100.0)
전 체	2,902 (42.3)	3,965 (57.7)	6,867 (100.0)

 $[\]mathbf{r}^2 = 1005.0708$, p < 0.0001

o 부채

-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 부채율이 각각 47.6%, 45.8%로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28.6%, 일반 저소득가구 29%에 비해 가구 부채비율이 매우 높음.
- 가구 평균부채액은 차상위계층이 1186.8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크며, 차차상위계층이 951만원, 일반저소득가구 가 716.7만원,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가 616.8만원임. 기초수급가구가 594.9만원으로 가장 적음.

0 생활곤란의 원인

- 생활곤란 원인으로 47.4%가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 사업실패가 21.1%, 질병/장애/사고가 11.4%, 실직이 10.2%로 나타남.
- 생활곤란의 원인으로 수급가구와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 경우 특히 질병/장애/사고를 원인으로 드는 가구가 각각 51.5%, 17.4%로 나타나, 차상위계층 10.6%, 차차상위계층 10.8%, 일반저소득가구 7.8%에 비해 높음.

<표 43>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곤란 원인

단위 : 명, %

구 분	사 업 실 패	좋 은 일자리 못 얻음	실 직	빚	질 병 장 애 사 고	게으름	사 별 이 혼 별 거	경 제 어려움	기 타	계
수급가구	48 (10.6)	209 (46.2)	34 (7.5)	18 (4.0)	129 (28.5)	2 (0.4)	6 (1.3)	1 (0.2)	5 (1.1)	452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155 (16.5)	469 (49.8)	90 (9.6)	23 (2.4)	164 (17.4)	11 (1.2)	6 (0.6)	11 (1.2)	13 (1.4)	942 (100.0)
차상위계층	47 (17.2)	129 (47.3)	31 (11.4)	22 (8.1)	29 (10.6)	1 (0.4)	3 (1.1)	5 (1.8)	6 (2.2)	273 (100.0)
차차상위	136 (22.9)	275 (46.2)	55 (9.2)	35 (5.9)	64 (10.8)	4 (0.7)	4 (0.7)	15 (2.5)	7 (1.2)	595 (100.0)
일반 저소득	825 (23.7)	1,639 (47.1)	377 (10.8)	184 (5.3)	270 (7.8)	25 (0.7)	20 (0.6)	109	30 (0.9)	3,479 (100.0)
전 체	1,211 (21.1)	2,721 (47.4)	587 (10.2)	282 (4.9)	656 (11.4)	43 (0.7)	39 (0.7)	141 (2.5)	61 (1.1)	5,741 (100.0)

 $x^2 = 289.9944$, p < 0.0001

<표 44>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부채액

구 분	0 원	1천만원 이 하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초 과	Й	평 균 (만원)
수급가구	392 (81.2)	53 (11.0)	11 (2.3)	9 (1.9)	18 (3.7)	483 (100.0)	375.5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709 (71.4)	141 (14.2)	60 (6.0)	31 (3.1)	52 (5.2)	993 (100.0)	616.8
차상위계층	152 (52.4)	54 (18.6)	35 (12.1)	20 (6.9)	29 (10.0)	290 (100.0)	1186.8
차차상위	357 (54.2)	148 (22.5)	72 (10.9)	29 (4.4)	53 (8.0)	659 (100.0)	951.0
일반 저소득	3,156 (71.0)	452 (10.2)	343 (7.7)	211 (4.8)	281 (6.3)	4,443 (100.0)	716.7
전 체	4,766 (69.4)	848 (12.3)	521 (7.6)	300 (4.4)	433 (6.3)	6,868 (100.0)	720.6

 $x^2 = 201.3511$, p < 0.0001

o 미래 전망

- 향후 3년간 가구경제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18.9%로 1/5 수준이 안됨. 반면, 약 1/3 수준인 28.3%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표 45> 저소득층 가구의 향후 3년간 가구경제수준 변화전망

구 분	더욱 악화	악 화	변화없이 지속	다소 호전	크게 호전	계
수급가구	44	169	257	13		483
ナ ロバイ	(9.1)	(35.0)	(53.2)	(2.7)		(100.0)
최저생계 이하	109	395	430	51	7	992
비수급가구	(11.0)	(39.8)	(43.3)	(5.1)	(0.7	(100.0)
차상위계층	15	87	157	31		290
사성되게등	(5.2)	(30.0)	(54.1)	(10.7)	_	(100.0)
차차상위	32	150	368	105	4	659
\\\\\\\\\\\\\\\\\\\\\\\\\\\\\\\\\\\\\\	(4.9)	(22.8)	(55.8)	(15.9)	(0.6)	(100.0)
일반 저소득	127	815	2,417	1,007	77	4,443
클린 시소득 	(2.9)	(18.3)	(54.4)	(22.7)	(1.7)	(100.0)
전 체	327	1,616	3,629	1,207	88	6,867
선 제	(4.8)	(23.5)	(52.8)	(17.6)	(1.3)	(100.0)

 $[\]mathbf{r}^2 = 593.2704, p < 0.0001$

3. 주거 및 생활환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 주거실태

- 0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과반수를 넘음.
-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영구임대아파트 45.7%, 공공임대아파트 11.5%로 전체 가구의 57.2%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그 외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21.3%로 가장 많음.
- o 약 80%의 가구가 월세를 지불함
 - 주거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가 79.3%로 가장 많음. 한달 평균 월세가 9.9만원으로 이는 가구소비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전세는 15.3%임. 평균 전세가격은 2140.5만원임.
- o 약 30%의 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에 거주함.
 - 거주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은 9.8평으로, 74.5%가 12평 이하 주택에 거주함.

<표 4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거주점유형태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자 가	38	1.3
전 세	447	15.3
보증부월세	2,063	70.6
월세/사글세	253	8.7
기 타	122	4.2
전 체	2,923	100.00

<표 4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택 전용면적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평 균	
9평 이하	1,149	39.5		
9평 초과~12평	1,016	35.0		
12평 초과~15평	586	20.2	9.8평	
15평 초과~18평	122	4.2	9.08	
18평 초과	32	1.1		
전 체	2,905	100.0		

<표 48>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구 분 충 족			Эl			
구 군	5 7	계	면적 미달	방수 미달	모두 미달) Al
응답자수	2,040	883	710	379	206	2,923
비 율	69.8	30.2	24.3	13.0	7.0	100.00

(2) 희망 주거복지정책

o 희망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월임대료 보조가 34.5%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19.6%, 저금리 전세자금 융자가 10.4%임.

<표 49>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희망 주거복지정책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7	ή
T T	그단기	2판귀	응답자수	비 율
필요없음	139	83	222	4.2
저금리 전세자금 융자	314	230	544	10.4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융자	120	170	290	5.5
주택수리자금 보조	169	225	394	7.5
월임대료 보조	1,162	650	1,812	34.5
공공(국민)임대아파트 입주	176	317	493	9.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661	369	1,030	19.6
주거환경개선	102	329	431	8.2
기 타	19	20	39	0.7
전 체	2,862	2,393	5,255	100.0

2) 저소득층 가구

(1) 주거실태

o 거주주택유형

- 저소득가구의 소득별로 거주주택 유형에 차이가 남.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가구는 다가구 주택 35.4%, 단독주택 34.9%, 연립/다세주택 거주가 21.3%임. 영구/공공임대아파트는 3.2%임.
- 차상위계층가구의 35.5%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단독주택이 27.9%, 연립주택/다세주택이 25.9%임.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는 3.1%임.
- 차차상위계층가구의 30.7%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30.5%는 다가구주택, 26.7%는 단독주택에 거주함.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는 3.6%임.
- 일반저소득가구는 34.5%가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27.9%가 단독주택에, 19.5%가 다가구주택에, 14.4%가 아파트에 거주함. 영구/공공임대아파트거주는 1.1%임.

<표 50> 저소득층 가구의 거주주택유형

단위:명,%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 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구/공공 임대아파트	상가,주택, 오피스텔	기 타	À
수급가구	182 (37.7)	155 (32.1)	8 (1.7)	85 (17.6)	29 (6.0)	1 (0.2)	23 (4.8)	483 (100.0)
최저생계 이하	347	352	15	212	32	11	24	993
비수급가구	(34.9)	(35.4)	(1.5)	(21.3)	(3.2)	(1.1)	(2.4)	(100.0)
차상위계층	81 (27.9)	103 (35.5)	10 (3.4)	75 (25.9)	9 (3.1)	7 (2.4)	5 (1.7)	290 (100.0)
차차상위	176	201	27	202	24	18	11	659
	(26.7)	(30.5)	(4.1)	(30.7)	(3.6)	(2.7)	(1.7)	(100.0)
일반 저소득	1,240	867	640	1,535	47	84	30	4,443
	(27.9)	(19.5)	(14.4)	(34.5)	(1.1)	(1.9)	(0.7)	(100.0)
전 체	2,026	1,678	700	2,109	141	121	93	6,868
	(29.5)	(24.4)	(10.2)	(30.7)	(2.1)	(1.8)	(1.4)	(100.0)

 $[\]mathbf{r}^2 = 611.0683, p < 0.0001$

0 주거 점유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 자가가 10% 미만임. 보증 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가 29.9%, 차상위계층이 35.5%, 차차상위계층이 39.8%, 일반저소득가구가 9.1%임. 일반저소득가구는 자가거주자가 53.8%이고, 차가인 경우도 주로 전세임.
- 저소득가구 중 월세로 사는 가구의 한달 평균 지불 월세는 21.2만원임

<표 51> 저소득층 가구의 점유형태

구 분	자 가	전 세	보증부월세	월 세	기 타	계
수급가구	25	237	158	29	34	483
	(5.2)	(49.1)	(32.7)	(6.0)	(7.0)	(100.0)
최저생계 이하	65	567	247	50	64	993
비수급가구	(6.5)	(57.1)	(24.9)	(5.0)	(6.4)	(100.0)
차상위계층	27	149	93	10	11	290
	(9.3)	(51.4)	(32.1)	(3.4)	(3.8)	(100.0)
차차상위	57 (8.6)	331 (50.2)	241 (36.6)	21 (3.2)	9 (1.4)	659 (100.0)
일반 저소득	2,389	1,639	371	33	11	4,443
	(53.8)	(36.9)	(8.4)	(0.7)	(0.2)	(100.0)
전 체	2,563	2,923	1,110	143	129	6,868
	(37.3)	(42.6)	(16.2)	(2.1)	(1.9)	(100.0)

 $x^2 = 1897.8734$, p < 0.0001

<표 52> 저소득층 가구의 보증부월세 보증금

단위 : 명, %

구 분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600만원	600만원 초과 ~1200만원	1200만원 초 과	계	평 균 (만원)
수급가구	53 (33.5)	47 (29.7)	37 (23.4)	21 (13.3)	158 (100.0)	679.8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67 (27.1)	66 (26.7)	63 (25.5)	51 (20.6)	247 (100.0)	857.6
차상위계층	18 (19.4)	30 (32.3)	28 (30.1)	17 (18.3)	93 (100.0)	932.3
차차상위	38 (15.8)	56 (23.2)	76 (31.5)	71 (29.5)	241 (100.0)	1,172.5
일반 저소득	30 (8.1)	75 (20.2)	94 (25.3)	172 (46.4)	371 (100.0)	1,648.5
전 체	206 (18.6)	274 (24.7)	298 (26.8)	332 (29.9)	1,110 (100.0)	1,171.3

 $[\]mathbf{x}^2 = 122.2571, p < 0.0001$

- 0 주거 전용면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 기초수급가구와 기초생계이하 비수급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은 평균 약 10평 내외임. 차상위계층은 12.8평, 차차상 위계층은 13.3평, 일반저소득가구는 19.9평임.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에 사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이 36.2%로 가장 많음. 기초수급가구와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 구가 약 30% 수준임. 차차상위계층은 24%가, 일반저소득가구는 15.8%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살고 있음.

<표 53>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전용면적

구 분	9평 이하	9평 초과 ~12평	12평 초과 ~15평	15평 초과 ~18평	18평 초과 ~25.7평	25.7평 초 과	계	평 (평)
수급가구	271 (56.2)	114 (23.7)	54 (11.2)	25 (5.2)	15 (3.1)	3 (0.6)	482 (100.0)	9.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398 (40.2)	297 (30.0)	149 (15.0)	78 (7.9)	60 (6.1)	9 (0.9)	991 (100.0)	10.5
차상위계층	50 (17.2)	95 (32.8)	81 (27.9)	34 (11.7)	25 (8.6)	5 (1.7)	290 (100.0)	12.8
차차상위	124 (18.9)	193 (29.4)	154 (23.4)	90 (13.7)	89 (13.5)	7 (1.1)	657 (100.0)	13.3
일반 저소득	202 (4.6)	417 (9.4)	818 (18.4)	715 (16.1)	1,456 (32.8)	828 (18.7)	4,436 (100.0)	19.9
전 체	1,045 (15.2)	1,116 (16.3)	1,256 (18.3)	942 (13.7)	1,645 (24.0)	852 (12.4)	6,856 (100.0)	16.8

 $[\]mathbf{x}^2 = 2580.2318, p < 0.0001$

<표 54>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3	충족		Ol	달		Я
<u> </u>	=	ъ Т	소 계	면적 미달	방수 미달	모두 미달	Л
수급가구	응답자수	380	103	94	21	12	483
<u> </u>	비율	78.7	21.3	19.5	4.3	2.5	100.0
최저생계 이하	응답자수	689	304	221	149	66	993
비수급가구	비율	69.4	30.6	22.3	15.0	6.6	100.0
차상위계층	응답자수	185	105	59	76	30	290
사성되게등	비율	63.8	36.2	20.3	26.2	10.3	100.0
차차상위	응답자수	501	158	83	117	42	659
NNOT	비율	76.0	24.0	12.6	17.8	6.4	100.0
일반 저소득	응답자수	3,741	702	137	625	64	4,443
글린 시오국	비율	84.2	15.8	3.1	14.1	1.4	100.0
전 체	응답자수	5,496	1,372	594	992	214	6,868
신 세	비율	80.0	20.0	8.6	14.4	3.1	100.0

(2) 희망 주거복지정책

o 최저생계이하 비수급가구의 26.5%, 차상위계층의 25.7%, 차차상위계층 23.4%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함. 반면 일반저소득가구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가 21.8%로 가장 많음.

<표 55> 저소득층 가구의 희망 주택정책

단위 : 명, %

구 분	의 의 교 교	저금리 전세자금 융 자	주 택 구입자금 융 자	주 택 수리자금 보 조	일정액 월임대료 보 조	공공임대 아파트 입 주	영구임대 아파트 입 주	주거환경 개 선	기 타	Ä
수급가구	39 (4.4)	153 (17.1)	88 (9.8)	63 (7.0)	139 (15.5)	134 (15.0)	234 (26.1)	42 (4.7)	3 (0.3)	895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91 (4.9)	294 (15.7)	221 (11.8)	144 (7.7)	257 (13.7)	264 (14.1)	496 (26.5)	99 (5.3)	7 (0.4)	1,873 (100.0)
차상위계층	17 (3.0)	95 (16.9)	94 (16.8)	51 (9.1)	51 (9.1)	73 (13.0)	144 (25.7)	35 (6.2)	1 (0.2)	561 (100.0)
차차상위	32 (2.5)	259 (20.2)	237 (18.5)	74 (5.8)	97 (7.6)	197 (15.4)	300 (23.4)	82 (6.4)	3 (0.2)	1,281 (100.0)
일반 저소득	549 (6.6)	1,086 (13.0)	1,818 (21.8)	1,231 (14.8)	305 (3.7)	1,079 (12.9)	1,026 (12.3)	1,205 (14.5)	35 (0.4)	8,334 (100.0)
전 체	728 (5.6)	1,887 (14.6)	2,458 (19.0)	1,563 (12.1)	849 (6.6)	1,747 (13.5)	2,200 (17.0)	1,463 (11.3)	49 (0.4)	12,944 (100.0)

 $\mathbf{x}^2 = 1263.0771$, p < 0.0001

4. 건강 및 의료기관 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o 의료기관 이용

- 기초생활수급가구주의 33.4%가 장애인이며, 45.8%가 만성질환자임. 지난 3개월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는 86.8%임.
- 3개월간 외래진료 횟수는 12.3회, 평균의료비용은 12.2만원임. 의료보조기구 구입 및 임대 비용은 1년 평균 47.3 만원임.
- 가구의 73.7%가 주로 병원을 이용함.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가구는 4.6%임.

<표 5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의료기관 이용실태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있다	2538	86.8		
없다	385	13.2		
전 체	2923	100		

<표 5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의료기관 이용횟수 및 의료비용

	2004년 6월~2005년 5월		
외래진료 평균 횟수(회)	평균입원 일 수(일)	평균의료비용(만원)	의료보조기구 구입·임대비용(만원)
12.3	2.6	12.2	47.3

o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97.3%는 의료급여 대상가구로, 69.8%는 의료급여 1종이며, 27.5%는 의료급여 2종임.
- 의료급여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29.7%가 의료급여 혜택범위가 좁음을, 19.5%가 건강보험 적용환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0 희망 의료지원서비스

- 희망하는 의료지원서비스로 46.4%가 의료비 지원을, 20.8%가 병원입원 및 시설입소 알선을, 17.3%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12.7%가 의료기관이용시 교통서비스를 들고 있음.

<표 58>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의료보장 실태

단위 : 명, %

의료보장 유형	응답자수	비 율		
직장가입 건강보험	39	1.3		
지역가입 건강보험	39	1.3		
의료급여 1종	2,038	69.8		
의료급여 2종	803	27.5		
전 체	2,919	100.0		

<표 59> 기초생활수급가구 의료급여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문제점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의료급여 혜택범위가 좁다	844	29.7
의료급여 적용진료에서 본인 부담비용이 많다	437	15.4
의료급여적용기간이 제한되어있다	297	10.5
건강보험적용환자에 비해 차별대우 받는다	554	19.5
의료급여증 재발급 절차가 까다롭다	156	5.5
기타	13	0.5
전 체	2,841	100.0

<표 60>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희망 의료지원 서비스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의료비 지원	2,473	46.4		
병원입원 및 시설 입소 안내	1,110	20.8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923	17.3		
의료기관 이용시 교통서비스	678	12.7		
주간보호서비스	99	1.9		
기타	49	0.9		
전 체(중복응답)	5,332	100		

2) 저소득층 가구

o 의료기관 이용

- 3개월간 외래진료 횟수는 기초수급가구가 가장 많았음. 그리고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가구 순임.
- 평균의료비용은 차상위계층이 23.3만원, 차차상위계층이 19.9만원, 일반저소득가구가 17.7만원, 최저생계이하비수 급가구가 16.7만원임.

<표 61>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기관 이용횟수 및 의료비용

	외래진료 평균회수(회)	평균병원 입원일수(일)	평균의료 비용(만원)	의료보조기구 구입· 임대 평균비용(만원)
수급가구	10.1	1.6	10.8	62.5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8.6	1.8	16.7	21.5
차상위계층	8.5	1.4	23.3	_
차차상위	6.3	1.6	19.9	53.8
일반 저소득	5.7	1.2	17.7	63.3

o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것에 비해, 최저생계이하비수급가구의 경우 76.2%가 지역가입 건강보험과 13.4%가 직장가입건강보험 가구임. 의료급여가구는 10.4%임.
- 차상위계층은 72.8%가 지역가입건강보험, 19.7%가 직장가입건강보험 가구임. 의료급여가구는 7.5%임.
- 차차상위계층은 74.2%가 지역가입건강보험, 23.6%가 직장가입건강보험 가구임. 의료급여가구는 2.3%임.
- 일반저소득가구는 59.5%가 지역가입건강보험, 38.5%는 직장가입건강보험 가구임. 의료급여 가구는 2.1%임.

<표 62>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보장 유형

단위:%

구 분	직장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계
수급가구	1.4	10.8	67.5	20.3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13.4	76.2	3.2	7.2	100.0
차상위계층	19.7	72.8	3.4	4.1	100.0
차차상위	23.6	74.2	1.1	1.2	100.0
일반 저소득	38.5	59.5	1.6	0.5	100.0
전 체	30.1	60.4	6.5	3.1	100.0

5. 문화여가 및 정보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O 문화여가활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거의 대부분은 극장, 운동, 박물관, 도서구입 등의 문화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표 63>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필요성

단위 : 명, %

	참여	없음	필요함		
	응답자 수	답자 수 비율		비율	
극장	2,736	93.6	679	23.5	
스포츠	2,882	98.0	535	18.5	
박물관	2,858	97.8	512	17.7	
여행	2,723	93.2	846	29.3	
책	2,624	89.8	734	25.4	
비디오	2,737	93.6	602	20.9	
음반	2,828	96.7	504	17.5	

O 정보이용

- 기초수급가구의 69.5%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30.5%는 보유하고 있음. 컴퓨터 보유가구의 88.4%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표 64>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이용률

	컴퓨터보유		인	일일평균		
	김규디도규		210	인터넷이용시간		
Ф	아니오	계	બા	아니오	계	평균
890	2,027	2,917	785	103	888	2.10
30.5	69.5	100.0	88.4	11.6	100.0	3.19

2) 저소득층 가구

O 문화여가활동

<표 65>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필요성

	극장	관람	스	포크	·관람	박물관 전시관		여행 가족소		·족소풍	
	없음(0회)	필요함	없음(0	회)	필요함	없음(0회)	핕	l요함	없음(0	회)	필요함
수급가구	451	107	480)	90	477		74	440)	168
구입기구 	93.4	22.4	99.4	4	18.8	98.8		15.5	91.	1	34.9
최저생계 이하	924	283	980)	217	970		213	860)	451
비수급가구	93.1	29.1	98.7	7	22.3	97.7		21.9	86.6	3	46.1
차상위 계층	237	127	279	9	99	271		94	197	7	176
시경기 계등	81.7	44.6	96.2	2	34.7	93.4		33.0	67.9	9	61.1
· 차차상위	495	321	628	3	233	600		238	392	2	435
NNOTI	75.1	49.6	95.3	3	36.3	91.0		37.1	59.5	5	67.0
일반 저소득	2,873	2,623	3,987	7	1,962	3,846	1	,886	1,908	3	3,335
글린 시소국	64.7	60.2	89.7	7	45.3	86.6	43.5		42.9		76.1
	-	책 잡지		비디오테이프				음반, CD구			2 OH
	없음(0회) 필9	요함	9	d음(0회)	필요함	일요함 없		음(0회)		필요함
수급가구	441		102		463	73		477			57
ナロ ガエ	91.3	2	1.2		95.9	15.3		98.8			12.0
최저생계 이하	887		262		894	228		950			174
비수급가구	89.3	2	7.0		90.0	23.5		9	5.7		18.0
차상위 계층	215		131		220	114		4	265		85
시경기 계등	74.1	4	5.6		75.9	40.1		9	1.4		29.9
 	486 2		299		509	260		601			201
NAGTI	73.7	4	6.1		77.2	40.4		9	1.2		31.2
일반 저소득	2,778	2,	475		3,021	2,161		3,552			1,814
글린 시포국	62.5	5	6.8		68.0	49.7		7	9.9		41.9

O 정보이용

<표 66> 저소득층 가구의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이용률

	= 1	컴퓨터보유		인터	넷 서비스	일일평균 인터넷이용시간	
	Й	아니오	계	Й	아니오	계	평균
人コココ	80	402	482	80	402	482	2.0
수급가구	16.6	16.6 83.4 100		16.6	83.4	100	2.8
최저생계 이하	226	762	988	226	762	988	2.1
비수급가구	22.9	77.1	100	22.9	77.1	100	3.1
차상위 계층	152	138	290	152	138	290	2.0
사성기 세등	52.4	47.6	100	52.4	47.6	100	2.8
	360	296	656	360	296	656	2.1
AIAIGH	54.9	45.1	100	54.9	45.1	100	3.1
이바 되시드	3,194	1,242	4,436	3,194	1,242	4,436	3.0
일반 저소득	72.0	28.0	100	72.0	28.0	100	3.0

6.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O 복지시설 인지와 이용률

- 복지시설 중 가장 인지율이 높은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로 84.3%가 인지하고 있으며, 46.6%가 이용한 적이 있음. 이어 사회복지관 인지율이 72%, 이용률이 23.9%임. 노인복지관 인지율은 64.2%, 이용률은 15.1%임. 구청사회복지담당부서 인지율은 50.5%, 이용률은 8.9%임. 장애인복지관 인지율은 43.9%, 이용률은 13.7%임.

<표 6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복지시설 인지율 및 이용률

		인지여부			이용경험여부	1
	있다	없다	계	했음	안했음	계
사회복지관	2,101	816	2,917	496	1,575	2,071
사외국시ゼ	72.0	28.0	100.0	23.9	76.1	100.0
노인복지관	1,870	1,045	2,915	278	1,563	1,841
도인국시된	64.2	35.8	100.0	15.1	84.9	100.0
장애인복지관	1,279	1,635	2,914	171	1,078	1,249
3에인크시킨	43.9	56.1	100.0	13.7	86.3	100.0
여성발전센터,	348	2,564	2,912	17	316	333
여성인력개발센터	12.0	88.0	100.0	5.1	94.9	100.0
청소년회관,	500	2,412	2,912	30	456	486
수련관,문화센터	17.2	82.8	100.0	6.2	93.8	100.0
нал	2,556	359	2,915	991	1,544	2,535
보건소	87.7	12.3	100.0	39.1	60.9	100.0
직업훈련기관	323	2,587	2,910	37	276	313
- 학급운인기선 -	11.1	88.9	100.0	11.8	88.2	100.0
자활후견기관 -	207	2,703	2,910	15	182	197
사결우선기선	7.1	92.9	100.0	7.6	92.4	100.0
고용안정센터	328	2,581	2,909	40	276	316
7000CH	11.3	88.7	100.0	12.7	87.3	100.0
주민자치센터	2,459	457	2,916	1,139	1,303	2,442
구근사시센터	84.3	15.7	100.0	46.6	53.4	100.0
구청	1,467	1,439	2,906	128	1,312	1440
사회복지담당부서	50.5	49.5	100.0	8.9	91.1	100.0
서울시	423	2,483	2,906	15	391	406
사회복지담당부서	14.6	85.4	100.0	3.7	96.3	100.0
노인·장애인	248	2,656	2,904	6	232	238
주간/단기보호소	8.5	91.5	100.0	2.5	97.5	100.0
기정프러사다.	222	2,679	2,901	3	210	213
가정폭력상담소	7.7	92.3	100.0	1.4	98.6	100.0

O 필요한 복지시설

- 필요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이 27.8%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복지관 20.6%, 보건소 18.5%, 장애인 복지관 11.9%, 주민자치센터 11.8%, 직업훈련기관 4%임.

<표 68>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필요한 복지시설(복수응답)

구분	응답자수	비율
사회복지관	1,580	27.8
노인복지관	1,168	20.6
장애인복지관	677	11.9
보건소	1,051	18.5
직업훈련기관	227	4.0
고용안정센터	166	2.9
주민자치센터	669	11.8
구청사회복지담당부서	107	1.9
서울시사회복지담당부서	38	0.7

O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면담

- 지난 1년간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면담한 적이 있는 가구는 67.2%, 없는 가구는 32.8%임. 복지전담공 무원과 면담한 가구의 52.2%는 면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함. 도움이 안되었다는 가구는 11.6%임.

<표 69>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접촉과 도움정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면담 경험							
있음 없음 계							
1965	958	2,923					
67.2	32.8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접촉과 도움정도									
전혀도움이 도움이 도움이 매우 되지않았다 되지않았다 그저그렇다 되었다 도움이되었다 계										
33 195 710 914 110 1,962										
1.7	9.9	36.2	46.6	5.6	100.0					

2) 저소득층 가구

<표 70>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시설 인지 및 이용율

			인지			이용경험	
		있음	없음	응답자 수	있다	없다	응답자수
			206	481	54.0	219.0	273
	수급가구	57.2	42.8	100.0	19.8	80.2	100
	최저생계 이하	451.0	537	988	51.0	393.0	444
	비수급가구	45.6	54.4	100.0	11.5	88.5	100
	키사이게중	130.0	159	289	12.0	117.0	129
U 등I 변 되고	차상위계층	45.0	55.1	100.0	9.3	90.7	100
사회복지관	코 코 사이	304.0	351	655	14.0	288.0	302
	차차상위	46.4	53.6	100.0	4.6	95.4	100
		2,029.0	2,389	4,418	100.0	1,893.0	1,993
	일반 저소득	45.9	54.1	100.0	5.0	95.0	100
	TJ =	3,189.0	3,642	6,831	231.0	2,910.0	3,141
	전 체	46.7	53.3	100.0	7.4	92.6	100
	A 7 7 1 7	252.0	229	481	38.0	210.0	248
	수급가구	52.4	47.6	100.0	15.3	84.7	100
	최저생계 이하	387.0	602	989	29.0	348.0	377
	비수급가구	39.1	60.9	100.0	7.7	92.3	100
	차상위계층	112.0	178	290	8.0	104.0	112
		38.6	61.4	100.0	7.1	92.9	100
노인복지관	차차상위	257.0	399	656	13.0	243.0	256
		39.2	60.8	100.0	5.1	94.9	100
		1,805.0	2,624	4,429	95.0	1,687.0	1,782
	일반 저소득	40.8	59.2	100.0	5.3	94.7	100
	저 궤	2,813.0	4,032	6,845	183.0	2,592.0	2,775
	전 체	41.1	58.9	100	6.6	93.4	100
	۸ ¬ ¬ ¬	134.0	347.0	481	12.0	118.0	130
	수급가구	27.9	72.1	100	9.2	90.8	100
	최저생계 이하	186.0	802.0	988	4.0	177.0	181
	비수급가구	18.8	81.2	100	2.2	97.8	100
	ᅱ사이게중	71.0	219.0	290	1.0	69.0	70
자에이탈지기	차상위계층	24.5	75.5	100	1.4	98.6	100
장애인복지관	퀸 퀸 사이	184.0	471.0	655	6.0	177.0	183
	차차상위	28.1	71.9	100	3.3	96.7	100
	OTHE TIME	1,126.0	3,300.0	4,426	29.0	1,080.0	1,109
	일반 저소득	25.4	74.6	100	2.6	97.4	100
	저 캔	1,701.0	5,139.0	6,840	52.0	1,621.0	1,673
	전 체	24.9	75.1	100	3.1	96.9	100

			인지			이용경험	
		있음	없음	응답자 수	있다	없다	응답자수
	人コココ	134.0	347.0	481	1.0	40.0	41
	수급가구	27.9	72.1	100	2.4	97.6	100
	최저생계 이하	186.0	802.0	988	4.0	73.0	77
	비수급가구	18.8	81.2	100	5.2	94.8	100
┃ 여성발전센터,	ᅱ사이게ᄎ	71.0	219.0	290	1.0	32.0	33
여성인력개발	차상위계층	24.5	75.5	100	3.0	97.0	100
	차차상위	184.0	471.0	655	3.0	111.0	114
센터	사사성기	28.1	71.9	100	2.6	97.4	100
	일반 저소득	1,126.0	3,300.0	4,426	27.0	794.0	821
	크린 시오ㅋ	25.4	74.6	100	3.3	96.7	100
	전 체	1,701.0	5,139.0	6,840	36.0	1050.0	1,086
	면 제	24.9	75.1	100	3.3	96.7	100
	수급가구	57.0	424.0	481	1.0	40.0	41
	ナロハエ	11.9	88.1	100	2.4	97.6	100
	최저생계 이하	135.0	851.0	986	4.0	73.0	77
	비수급가구	13.7	86.3	100	5.2	94.8	100
 청소년회관	차상위계층	69.0	221.0	290	1.0	32.0	33
수련관,	N 0 11 11 0	23.8	76.2	100	3.0	97.0	100
문화센터	차차상위	175.0	480.0	655	3.0	111.0	114
- 도와앤디 -	AA611	26.7	73.3	100	2.6	97.4	100
	일반 저소득	1,304.0	3,114.0	4,418	27.0	794.0	821
	크린 시끄ㄱ	29.5	70.5	100	3.3	96.7	100
	전 체	1,740.0	5,090.0	6,830	36.0	1,050.0	1,086
		25.5	74.5	100	3.3	96.7	100
	수급가구	423.0	60.0	483	225.0	196.0	421
		87.6	12.4	100	53.4	46.6	100
	최저생계 이하	829.0	161.0	990	340.0	484.0	824
	비수급가구	83.7	16.3	100	41.3	58.7	100
	차상위계층	247.0	43.0	290	78.0	165.0	243
보건소	7,07,710	85.2	14.8	100	32.1	67.9	100
_	차차상위	572.0	87.0	659	137.0	431.0	568
		86.8	13.2	100	24.1	75.9	100
	일반 저소득	3,793.0	643.0	4,436	827.0	2,943.0	3,770
		85.5	14.5	100	21.9	78.1	100
	전 체	5,864.0	994.0	6,858	1,607.0	4,219.0	5,826
		85.5	14.5	100	27.6	72.4	100
	수급가구	37.0	442.0	479	2.0	35.0	37
	최저생계 이하	7.7	92.3	100	5.4	94.6	100
		52.0	935.0	987	4.0	46.0	50
	비수급가구	5.3	94.7	100	8.0	92.0	100
	차상위계층	31.0	259.0	290	1.0	28.0	29
직업훈련기관		10.7	89.3 571.0	100 654	3.4	96.6	100
	차차상위	83.0 12.7	87.3	100	3.0	79.0 96.3	82 100
			3,915.0	4,414	16.0	473.0	489
	일반 저소득	499.0 11.3	88.7	100	3.3	96.7	100
		702.0	6,122.0	6,824	26.0	661.0	687
	전 체	10.3	89.7	100	3.8	96.2	100
<u> </u>		10.0	03.7	100	0.0	۷۰.۷	100

			인지			이용경험	
		있음	없음	응답자 수	있다	없다	응답자수
	人コココ	20.0	461.0	481	0.0	19.0	19
	수급가구	4.2	95.8	100	0.0	100.0	100
	최저생계 이하	19.0	966.0	985	0.0	19.0	19
	비수급가구	1.9	98.1	100	0.0	100.0	100
	ᅱ사이게ᄎ	10.0	280.0	290	0.0	9.0	9
TISI들거기기	차상위계층	3.4	96.6	100	0.0	100.0	100
자활후견기관 	코 코 사이	32.0	622.0	654	0.0	31.0	31
	차차상위	4.9	95.1	100	0.0	100.0	100
		211.0	4,205.0	4,416	1.0	199.0	200
	일반 저소득	4.8	95.2	100	0.5	99.5	100
	TJ =11	292.0	6,534.0	6,826	1.0	277.0	278
	전 체	4.3	95.7	100	0.4	99.6	100
	A 7 7 7	42.0	439.0	481	8.0	33.0	41
	수급가구	8.7	91.3	100	19.5	80.5	100
	최저생계 이하	73.0	913.0	986	5.0	66.0	71
	비수급가구	7.4	92.6	100	7.0	93.0	100
	차상위계층	36.0	254.0	290	1.0	34.0	35
ם מא אורו		12.4	87.6	100	2.9	97.1	100
고용안정센터	차차상위	99.0	555.0	654	6.0	92.0	98
		15.1	84.9	100	6.1	93.9	100
	OTHE TIME	719.0	3,698.0	4,417	33.0	675.0	708
	일반 저소득	16.3	83.7	100	4.7	95.3	100
	저 ᆌ	969.0	5,859.0	6,828	53.0	900.0	953
	전 체	14.2	85.8	100	5.6	94.4	100
	۸ ¬ ¬ ¬	368.0	114.0	482	140.0	226.0	366
	수급가구	76.3	23.7	100	38.3	61.7	100
	최저생계 이하	795.0	194.0	989	176.0	615.0	791
	비수급가구	80.4	19.6	100	22.3	77.7	100
	ᅱ사이게ᄎ	237.0	53.0	290	46.0	189.0	235
-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81.7	18.3	100	19.6	80.4	100
[구인자시센터 	키 키 사이	547.0	110.0	657	75.0	468.0	543
	차차상위	83.3	16.7	100	13.8	86.2	100
	그 시다 내10	3,609.0	825.0	4,434	357.0	3,208.0	3,565
	일반 저소득	81.4	18.6	100	10.0	90.0	100
	저 ᆌ	5,556.0	1,296.0	6,852	794.0	4,706.0	5,500
	전 체	81.1	18.9	100	14.4	85.6	100

<표 71> 저소득층 가구의 필요복지시설(복수응답)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직업훈 련기관	고용안 정센터	주민자 치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부서	À
수급가구	264	263	80	175	21	32	89	27	2	953
구입기구 	27.7	27.6	8.4	18.4	2.2	3.4	9.3	2.8	0.2	2,006
최저생계 이하	484	445	161	433	111	100	196	24	6	1,960
비수급가구	24.7	22.7	8.2	22.1	5.7	5.1	10.0	1.2	0.3	4,020
차상위계층	142	102	42	105	51	38	73	14	4	571
사성기계등	24.9	17.9	7.4	18.4	8.9	6.7	12.8	2.5	0.5	1,242
차차상위	308	196	79	245	139	121	164	27	9	1,288
ALVIOLI	23.9	15.2	6.1	19.0	10.8	9.4	12.7	2.2	0.7	2,676
일반 저소득	2,166	1,563	709	1,514	911	691	918	214	57	8,743
글린 시소득	24.8	17.9	8.1	17.3	10.4	7.9	10.5	2.4	0.7	17,586

7.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O 복지서비스 인지와 이용

-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교통수단으로 95.7%가 인지하고 있고, 인지자의 95.5%가 이용하였음. 이어 무료건강진단 인지율이 89.2%, 인지자의 이용률은 89.4%임. 무료급식 인지율은 65.3%, 인지자의 이용률은 57%임. 식사배달서비스 인지율은 41.7%, 인지자의 이용률은 23.1%임.
- 노인복지서비스 중 인지율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여가활동과 취업지원으로 각각 7.2%, 7.8%가 인지하며, 주단 기보호시설 인지율도 11.2%에 그침.

<표 72>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예	아니오	계
경로연금	969 (63.9)	547 (36.1)	1,516 (100.0)
의료비 지원 (무료건강진단)	1,352 (89.2)	163 (10.8)	1,515 (100.0)
무료급식	990 (65.3)	526 (34.7)	1,516 (100.0)
물품지원	933 (61.7)	580 (38.3)	1,513 (100.0)
가정봉사	584 (38.6)	929 (61.4)	1,513 (100.0)
식사배달	632 (41.7)	884 (58.3)	1,516 (100.0)
방문간호, 간병	576 (38.0)	939 (62.0)	1,515 (100.0)
교통수당	1,451 (95.7)	65 (4.3)	1,516 (100.0)
주간, 단기 보호시설	170 (11.2)	1,345 (88.8)	1,515 (100.0)
취업지원 (취업알선)	118 (7.8)	1,397 (92.2)	1,515 (100.0)
여가활동	109 (7.2)	1,406 (92.8)	1,515 (100.0)
기타	13 (11.8)	97 (88.2)	110 (100.0)

<표 73>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계
경로연금	714 (74.0)	251 (26.0)	965 (100.0)
의료비 지원 (무료건강진단)	1,208 (89.4)	143 (10.6)	1,351 (100.0)
무료급식	560 (57.0)	423 (43.0)	983 (100.0)
물품지원	672 (72.6)	253 (27.4)	925 (100.0)
가정봉사	101 (17.6)	473 (82.4)	574 (100.0)
식사배달	143 (23.1)	477 (76.9)	620 (100.0)
방문간호, 간병	111 (19.8)	451 (80.2)	562 (100.0)
교통수당	1,384 (95.5)	65 (4.5)	1,449 (100.0)
주간, 단기 보호시설	12 (7.2)	154 (92.8)	166 (100.0)
취업지원 (취업알선)	2 (1.8)	112 (982)	114 (100.0)
여가활동	8 (7.5)	98 (92.5)	106 (100.0)
기타	13 (100.0)	_	13 (100.0)

^{*} 주: 이용경험은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O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경로연금과 의료비 지원임.

<표 74>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2개 선택)

단위: 명, %

		LII. 6, 70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경로연금	1,045	35.4
의료비 지원	932	31.5
무료급식	261	8.8
물품지원	240	8.1
가정봉사	71	2.4
식사배달	98	3.3
방문간호,간병	104	3.5
교통수당	180	6.1
주간, 단기보호시설	9	0.3
취업지원	16	0.5
여가활동	2	0.1
전 체	2,958	100.0

(2) 생활 곤란 및 취업

- O 노인이 있는 가구의 52.1%가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으며, 30.3%는 건강문제를, 10.9%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을 들고 있음.
- O 노인가구원의 7.0%가 취업상태에 있음.

<표 75>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응답자 유형별 어려움

구분	일상생활 문제	건강 문제	간병 문제	경제적 문제	의료비 문제	여가활용 문제	취업 문제	없음	계
가족 응답자	45 (19.9)	65 (28.8)	13 (5.8)	84 (37.2)	12 (5.3)	_	7 (3.1)	-	226 (100.0)
노인 응답자	119 (9.3)	390 (30.5)	25 (2.0)	699 (54.7)	29 (2.3)	-	9 (0.7)	7 (0.5)	1,278 (100.0)
전 체	164 (10.9)	455 (30.3)	38 (2.5)	783 (52.1)	41 (2.7)	_	16 (1.1)	7 (0.5)	1,504 (100.0)

2) 저소득층 가구

(1)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O 복지서비스 인지와 이용

- 저소득층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중 유일하게 과반수를 넘는 것은 교통수당으로 전체 응답자의 96.1%가 알고 있었음. 다음은 의료비 지원(46.4%), 무료급식(42.9%), 경로연금(35.1%)의 순이었음. 주,단기 보호 시설이나 취업지원, 여가활동의 경우는 10%를 밑돌아 상당히 인지율이 낮음이 드러남.
- 항목별로 취업지원과 여가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초수급가구의 인지율이 현저히 높음. 통계검증값을 고려할 때, 수급층과 다른 계층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서비스로는 의료비지원, 물품지원, 가정봉사, 식사배달로, 이들에 대한 홍보가 요망됨.
-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이용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교통수당(96.8%)인데, 모든 소득계층의 비율이 유사하였음. 다음으로는 물품지원(37.2%), 의료비 지원(35.6%), 취업지원(26.3%)의 순이었음.

<표 76>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여부

	н	스크리크	최저생계 이하	ə N 이 제 호	-1-1-1-10l		711	χ^2
구 .	분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계	(p값)
전	체	347 (14.8)	611 (26.1)	108 (4.6)	115 (4.9)	1,158 (49.5)	2,339 (100.0)	
7747	예	147 (42.4)	193 (31.6)	32 (29.6)	38 (33.0)	411 (35.5)	821 (35.1)	13.065*
경로연금	아니오	200 (57.6)	418 (68.4)	76 (70.4)	77 (67.0)	746 (64.5)	1,517 (64.9)	(0.011)
의료비	예	285 (82.1)	279 (45.7)	42 (38.9)	43 (37.4)	435 (37.6)	1,084 (46.4)	220.243***
지원	아니오	62 (17.9)	332 (54.3)	66 (61.1)	72 (62.6)	721 (62.4)	1,253 (53.6)	(0.000)
무료급식	예	224 (64.6)	271 (44.4)	43 (39.8)	39 (33.9)	427 (36.9)	1,004 (42.9)	88.104***
十五日刊	아니오	123 (35.4)	340 (55.6)	65 (60.2)	76 (66.1)	730 (63.1)	1,334 (57.1)	(0.000)
물품지원	예	200 (57.6)	191 (31.3)	30 (27.8)	27 (23.5)	210 (18.2)	658 (28.2)	210.002***
눌꿈시권	아니오	147 (42.4)	420 (68.7)	78 (72.2)	88 (76.5)	945 (81.8)	1,678 (71.8)	(0.000)
가정봉사	예	135 (38.9)	96 (15.7)	18 (16.7)	15 (13.0)	182 (15.7)	446 (19.1)	104.257***
10.97	아니오	212 (61.1)	515 (84.3)	90 (83.3)	100 (87.0)	974 (84.3)	1,891 (80.9)	(0.000)
식사배달	예	144 (41.5)	125 (20.5)	25 (23.1)	15 (13.0)	171 (14.8)	480 (20.5)	121.368***
극사메르	아니오	203 (58.5)	486 (79.5)	83 (76.9)	100 (87.0)	986 (85.2)	1,858 (79.5)	(0.000)
방문간호,	예	126 (36.3)	108 (17.7)	18 (16.7)	21 (18.3)	204 (17.7)	477 (20.4)	63.259***
간병	아니오	221 (63.7)	502 (82.3)	90 (83.3)	94 (81.7)	950 (82.3)	1,857 (82.3)	(0.000)
교통수당	예	335 (96.5)	593 (97.1)	101 (93.5)	112 (97.4)	1,106 (95.5)	2,247 (96.1)	5.125
	아니오	12 (3.5)	18 (2.9)	7 (6.5)	3 (2.6)	52 (4.5)	92 (3.9)	(0.275)
주간,단기	예	37 (10.7)	43 (7.1)	9 (8.3)	8 (7.0)	69 (6.0)	166 (7.1)	9.137
보호시설	아니오	310 (89.3)	566 (92.9)	99 (91.7)	107 (93.0)	1,086 (94.0)	2,168 (92.9)	(0.058)
취여되어	예	28 (8.1)	62 (10.2)	15 (13.9)	9 (7.8)	81 (7.0)	195 (8.4)	9.726*
취업지원	아니오	319 (91.9)	548 (89.8)	93 (86.1)	106 (92.2)	1,074 (93.0)	2,140 (91.6)	(0.045)
여가활동	예	9 (2.6)	21 (3.4)	4 (3.7)	5 (4.3)	61 (5.3)	100 (4.3)	6.334
어/1월당	아니오	337 (97.4)	589 (96.6)	104 (96.3)	110 (95.7)	1,094 (94.7)	2,234 (95.7)	(0.176)

<표 77>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계	<i>ን</i> ² (p갑ኒ)
	있다	95 (64.6)	22 (11.5)	2 (6.5)	3 (8.1)	52 (12.8)	174 (21.4)	
경로연금	없다	52 (35.4)	170 (88.5)	29 (93.5)	34 (91.9)	355 (87.2)	640 (78.6)	200.738***
	계	149 (18.1)	192 (23.6)	31 (3.8)	37 (4.5)	407 (50.0)	814 (100.0)	(0.000)
0171	있다	226 (79.9)	66 (23.7)	11 (26.2)	14 (33.3)	65 (15.2)	382 (35.6)	000 0 40
의료비 지원	없다	57 (20.1)	212 (76.3)	31 (73.8)	28 (66.7)	364 (84.8)	692 (64.4)	338.943***
712	계	283 (26.4)	278 (25.9)	42 (3.9)	42 (3.9)	429 (39.9)	1,074 (100.0)	(0.000)
	있다	123 (55.4)	65 (24.0)	9 (20.9)	11 (28.9)	73 (17.3)	281 (28.2)	100,000
무료급식	없다	99 (44.6)	206 (76.0)	34 (79.1)	27 (71.1)	349 (82.7)	715 (71.8)	109.399***
	계	222 (22.3)	271 (27.2)	43 (4.3)	38 (3.8)	422 (42.4)	996 (100.0)	(0.000)
	있다	152 (77.6)	62 (32.5)	7 (23.3)	6 (23.1)	15 (7.2)	242 (37.2)	000 554
물품지원	없다	44 (22.4)	129 (67.5)	23 (76.7)	20 (76.9)	192 (92.8)	408 (62.8)	222.554***
	계	196 (30.2)	191 (29.4)	30 (4.6)	26 (4.0)	207 (31.8)	650 (100.0)	(0.000)
	있다	60 (44.4)	4 (4.2)	2 (11.1)	1 (6.7)	3 (1.7)	70 (15.9)	**
가정봉사	없다	75 (55.6)	91 (95.8)	16 (88.9)	14 (93.3)	174 (98.3)	370 (84.1)	
	계	135 (30.7)	95 (21.6)	18 (4.1)	15 (3.4)	177 (40.2)	440 (100.0)	
	있다	61 (42.7)	11 (8.8)	2 (8.0)	1 (7.1)	7 (4.2)	82 (17.4)	92.455***
식사배달	없다	82 (57.3)	114 (91.2)	23 (92.0)	13 (92.9)	158 (95.8)	390 (82.6)	
	계	143 (30.3)	125 (26.5)	25 (5.3)	14 (3.0)	165 (35.0)	472 (100.0)	
비디기는	있다	42 (33.3)	5 (4.7)	1 (0.2)	1 (4.8)	8 (4.0)	55 (11.6)	70.100
방문간호, 간병	없다	84 (66.7)	102 (95.3)	17 (94.4)	20 (95.2)	193 (96.0)	418 (88.4)	79.100*** (0.000)
10	계	126 (26.6)	107 (22.6)	18 (3.8)	21 (4.4)	201 (42.5)	473 (100.0)	(0.000)
	있다	328 (97.9)	575 (97.0)	99 (98.0)	108 (97.3)	1,060 (96.2)	2,170 (96.8)	0.070
교통수당	없다	7 (2.1)	18 (3.0)	2 (2.0)	3 (2.7)	42 (3.8)	72 (3.2)	3.276 (0.513)
	계	335 (14.9)	593 (26.4)	101 (4.5)	111 (5.0)	1,102 (49.2)	2,242 (100.0)	(0.510)
X 21 E1 21	있다	7 (19.2)	3 (7.1)	1 (12.5)	1 (12.5)	5 (7.2)	17 (10.4)	
주간,단기 보호시설	없다	29 (80.6)	39 (92.9)	7 (87.5)	7 (87.5)	64 (92.8)	146 (89.6)	**
	계	36 (22.1)	42 (25.8)	8 (4.9)	8 (4.9)	69 (42.3)	163 (100.0)	
	있다	4 (14.3)	22 (35.5)	7 (46.7)	3 (33.3)	15 (18.8)	51 (26.3)	10 E70
취업지원	없다	24 (85.7)	40 (64.5)	8 (53.3)	6 (66.7)	65 (81.3)	143 (73.7)	10.578*
	계	28 (14.4)	62 (32.0)	15 (7.7)	9 (4.6)	80 (41.2)	194 (100.0)	(0.002)
	있다	_	2 (9.5)	_		5 (8.5)	7 (7.1)	
여가활동	없다	9(100.0)	19 (90.5)	4(100.0)	5(100.0)	54 (91.5)	91 (92.9)	**
	계	9(100.0)	21 (21.4)	4(100.0)	5(100.0)	59 (60.2)	98 (100.0)	

O 필요한 복지서비스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경로연금(40.6%)과 의료비 지원 (36.4%)이었음. 즉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표 78>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2개 선택)

단위: 명, %

구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계
경로연금	258(37.8)	507 (42.5)	86(41.7)	87(39.9)	907(40.4)	1,845(40.6)
의료비 지원	262(38.4)	429 (36.0)	76(36.9)	79(36.2)	810(36.1)	1,656(36.4)
무료급식	38(5.6)	54 (4.5)	10(4.9)	13(6.0)	84(3.7)	199(4.4)
물품지원	30(4.4)	58 (4.9)	6(2.9)	7(3.2)	80(3.6)	181(4.0)
가정봉사	19(2.8)	11 (0.9)	2(1.0)	5(2.3)	41(1.8)	78(1.7)
식사배달	15(2.2)	20 (1.7)	2(1.0)	4(1.8)	15(0.7)	56(1.2)
방문간호,간병	17(2.5)	16 (1.3)	1(0.5)	5(2.3)	65(2.9)	104(2.3)
교통수당	36(5.3)	63 (5.3)	10(4.9)	12(5.5)	162(7.2)	283(6.2)
주간,단기보호시설	3(0.4)	5 (0.4)	3(1.5)	1(0.5)	18(0.8)	30(0.7)
취업지원	4(0.6)	27 (2.3)	10(4.9)	5(2.3)	39(1.7)	85(1.9)
여가활동	_	2 (0.2)	_	=	25(1.1)	27(0.6)
전 체	682(100.0)	1,192 (100.0)	206(100.0)	218(100.0)	2,246(100.0)	4,544(100.0)

(2) 생활곤란 및 취업

O 생활의 어려운 문제

- 노인부양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51.7%)와 건강문제(30.6%)의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유형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응답자의 경우는 건강문제(43.1%)를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인응답자는 경제적 문제(58.4%)에 대한 비중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음.
- 노인가구원으로 인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3.31점이었으며, 나머지는 보통인 3.00점보다 낮아 오히려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 소득계층별로는 경제적 부담, 취업의 어려움, 가족관계상의 어려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음. 경제적 부담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의 경우가 3.68점으로 다른 계층보다 월등히 높음. 부양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은 차차상위계층이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차상위계층(2.47점)이었음.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생활수급층의 경우는 2.28점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함.

<표 79> 저소득층 가구 응답자유형별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일상생활 문제	건강 문제	간병 문제	경제적 문제	의료비 문제	여가활용 문제	취업 문제	없음	계
가족	59	230	18	152	28	5	_	42	534
응답자	(11.0)	(43.1)	(3.4)	(28.5)	(5.2)	(0.9)		(7.9)	(100.0)
노인	71	500	28	1,083	93	15	5	60	1,855
응답자	(3.8)	(27.0)	(1.5)	(58.4)	(5.0)	(0.8)	(0.3)	(3.2)	(100.0)
전 체	130	730	46	1,235	121	20	102	5	2,389
	(5.4)	(30.6)	(1.9)	(51.7)	(5.1)	(0.8)	(4.3)	(0.2)	(100.0)

X2=176.625, p<.000

주1) 일상생활의 문제란 식사,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함.

O 취업상태

- 저소득층 가구의 노인가구원중 취업 노인은 전체의 37.4%로 나타남. 소득계층별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53.7% 나 취업하고 있었으며, 차차상위계층 46.1%, 일반저소득 41.5%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 반면, 수급층의 경우는 11.6%로 취업률이 매우 저조함.

<표 80>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취업유무

구분	취업	미취업	계
수급가구	40 (11.6)	305 (88.4)	345 (100.0)
최저생계이하 비수급가구	242 (39.7)	368 (60.3)	610 (100.0)
차상위계층	58 (53.7)	50 (46.3)	108 (100.0)
차차상위	53 (46.1)	62 (53.9)	115 (100.0)
일반저소득	478 (41.5)	673 (58.5)	1151 (100.0)
전 체	871 (37.4)	1,458 (62.6)	2,329 (100.0)

8. 장애인/만성질환자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O 복지서비스 인지와 이용

-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비 지원으로 전체의 89.6%가 알고 있었고, 장애수당은 87.6%, 각종 세금면제나 요금할인은 72.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반대로 인지율이 낮은 서비스는 자립재활센터(11.0%), 재활시설 및 그룹홈(13.6%), 주단기 보호시설(16.3%), 장 애인체육관(17.6%)였음. 장애인 택시, 셔틀은 프로그램 시작 시기에 비하여 43.7%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음.
-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인지율과 동일한 순위로 의료비 지원(91.2%), 장애수당(90.4%), 각종 세금면제 및 요금할인(79.1%), 교육비 지원(35.8%)로 조사되었음. 이외의 다른 서비스는 모두 2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음.

<표 81>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인/만성질환자 복지서비스 인지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장애수당	1,105 (87.6)	156 (12.4)	1,261 (100.0)
교육비 지원	468 (37.2)	790 (62.8)	1,258 (100.0)
의료비 지원	1,131 (89.6)	131 (10.4)	1,262 (100.0)
각종 세금면제, 요금할인	909 (72.0)	353 (28.0)	1,262 (100.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80 (22.3)	978 (77.7)	1,258 (100.0)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290 (23.1)	967 (76.9)	1,257 (100.0)
직업재활 및 훈련	259 (20.6)	999 (79.4)	1,258 (100.0)
재활시설 및 그룹홈	171 (13.6)	1,086 (86.4)	1,257 (100.0)
방문간호, 가정간호	440 (35.0)	818 (65.0)	1,258 (100.0)
가정봉사원	464 (36.9)	794 (63.1)	1,258 (100.0)
재활병원	332 (26.4)	927 (73.6)	1,259 (100.0)
주간, 단기 보호시설	205 (16.3)	1052 (83.7)	1,257 (100.0)
장애인 택시, 셔틀	550 (43.7)	708 (56.3)	1,258 (100.0)
장애인 심부름센터	277 (22.0)	980 (78.0)	1,257 (100.0)
장애인체육관	221 (17.6)	1,037 (82.4)	1,258 (100.0)
자립생활센터	138 (11.0)	1,120 (89.0)	1,258 (100.0)
기타	2 (4.9)	39 (95.1)	41 (100.0)

<표 82>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장애인/만성질환자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계
장애수당	995 (90.4)	106 (9.6)	1,101 (100.0)
교육비 지원	167 (35.8)	299 (64.2)	466 (100.0)
의료비 지원	1,030 (91.2)	99 (8.8)	1,129 (100.0)
세금면제, 요금할인	717 (79.1)	190 (20.9)	907 (100.0)
자립자금 대여	24 (8.6)	255 (91.4)	279 (100.0)
재활보조기구 교부	37 (12.8)	253 (87.2)	290 (100.0)
직업재활 및 훈련	16 (6.2)	242 (93.8)	258 (100.0)
재활시설 및 그룹홈	4 (2.4)	164 (97.6)	168 (100.0)
방문간호, 가정간호	71 (16.4)	363 (83.6)	434 (100.0)
가정봉사원	74 (16.1)	386 (83.9)	460 (100.0)
재활병원	25 (7.6)	303 (92.4)	328 (100.0)
주간,단기 보호시설	10 (4.9)	193 (95.1)	203 (100.0)
장애인 택시, 셔틀	79 (14.5)	465 (85.5)	544 (100.0)
장애인 심부름센터	13 (4.7)	262 (95.3)	275 (100.0)
장애인체육관	8 (3.7)	211 (96.3)	219 (100.0)
자립생활센터	2 (1.5)	134 (98.5)	136 (100.0)
기타	_	1 (100.0)	1 (100.0)

O 필요한 복지서비스

-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중 수요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장애수당으로 37.5%가 선택하였으며, 다 음은 의료비 지원(31.3%)이었음. 각종 세금면제 및 요금할인, 장애인 택시, 셔틀, 주단기 보호시설, 교육비 지원 등도 다른 서비스보다는 수요가 있음.

<표 83>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장애수당	378	37.5
교육비 지원	67	6.6
의료비 지원	316	31.3
각종 세금면제, 요금할인	99	9.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3	2.3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5	0.5
직업재활 및 훈련	23	2.3
재활시설 및 그룹홈	12	1.2
방문간호, 가정간호	23	2.3
가정봉사원	17	1.7
재활병원	17	1.7
주간, 단기 보호시설	8	7.9
장애인 택시, 셔틀	9	8.9
장애인 심부름센터	2	0.2
장애인체육관	2	0.2
자립생활센터	7	0.7
전 체	1,008	100.0

(2) 생활 및 취업실태

- o 가족의 부담정도가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것으로 3.78점을 기록함.
- 외출제약(2.88점), 부양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2.77점), 가족관계상의 어려움(2.89점)으로 보통인 3.00점보다 낮은 점수임. 응답자 유형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응답자의 경우 모든 수치가 3.00을 넘고 있어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84>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응답자유형별 가족의 부담정도 평균비교

구 분	가족응답자	장애인응답자	계	T값
N	385	1,151	1,536	
경제적 부담	4.07	3.68	3.78	5.747***
외출 제약	3.40	2.70	2.88	9.070***
부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움	3.29	2.60	2.77	9.165***
가족관계상의 어려움	3.35	2.74	2.89	8.381***

(3) 취업실태

-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는 9.3%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가구형태별로는 단독가구인 경우 3.8%로 특히 더 취업률이 낮았음.
-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24.6%로, 현재 취업자가 9.3%임을 고려하면, 취업을 원하는데 못하는 장애인이나 만성 질환자가 상당수준 있음을 의미함. 가구형태별로는 모부자/소년소녀가장가구의 경우가 40.2%로 현저한 차이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가구 27.6%, 단독가구 16.6%의 응답율을 보임.

<표 85>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형태별 취업유무

단위: 명, %

구 분	취업	미취업	계
일반가구	137 (13.2)	903 (86.8)	1,040 (100.0)
단독가구	30 (3.8)	761 (96.2)	791 (100.0)
모부자/소년소녀가장가구	23 (11.3)	181 (88.7)	204 (100.0)
전 체	190 (9.3)	1,845 (90.7)	2,035 (100.0)

X2=47.709, p<.000

<표 8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구형태별 취업희망여부

단위: 명. %

			E 11 0, 7°
구분	예	아니오	계
일반가구	284 (27.6)	745 (72.4)	1029 (100.0)
단독가구	130 (16.6)	655 (83.4)	785 (100.0)
모부자/소년소녀가장가구	82 (40.2)	122 (59.8)	204 (100.0)
전 체	496 (24.6)	1522 (75.4)	2018 (100.0)

X2=59.131, p<.000

2) 저소득층 가구

(1)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 0 복지서비스 인지와 이용
-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각종 세금면제, 요금할인(58.8%)이었고, 다음이 의료비 지원 (55.1%), 장애수당(53.2%)의 순이었음. 인지율이 낮은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8.0%), 재활시설/그룹홈(9.0%), 장애인체육관(11.5%),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11.7%) 등이었음.
- 소득계층별로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계층은 수급층이었음. 특히, 장애수당(76.0%), 의료비지원(85.1%),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19.8%), 방문간호, 가정간호(31.4%), 가정봉사원(32.2%)는 다른 계층보다 현저하게 인지율이 높았음. 반면 자립자금 대여는 차상위계층이 21.9%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직업재활 및 훈련에 대해서는 차차상위계층의 인지율(31.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59.1%(179명)이 응답한 각종 세금면제 및 요금할인이었고, 의료비 지원 이 49.6%(141명), 장애수당 41.2%(11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반적으로 수급층의 이용률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활시설 및 그룹홈과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층 이외의 다른 계층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

<표 87>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만성질환자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계	メ² (p값)
	있다	73 (79.3)	13 (28.9)	4 (18.2)	3 (15.0)	20 (21.1)	113 (41.2)	
┃ ┃ 장애수당	 없다	19 (20.7)	32 (71.1)	18 (81.8)	17 (85.0)	75 (78.9)	161 (58.8)	84.452***
0 11 10	 전체	92 (33.6)	45 (16.4)	22 (8.0)	20 (7.3)	95 (34.7)	274 (100.0)	(0.000)
	있다	11 (47.8)	1 (12.5)	1 (16.7)		1 (2,7)	14 (17.3)	
교육비	 없다	12 (52.2)	7 (87.5)	5 (83.3)	7(100.0)	36 (97.3)	67 (82.7)	22.102***
지원	 전체	23 (28.3)	8 (9.9)	6 (7.4)	7 (8.6)	37 (45.7)	81 (100.0)	(0.000)
	<u> </u>	89 (86.4)	19 (38.0)	5 (33.3)	4 (20.0)	24 (25.0)	141 (49.6)	
의료비	쓰니 없다	14 (13.6)	31 (62.0)	10 (66.7)	16 (80.0)	72 (75.0)	143 (50.4)	90.349***
지원	 전체	103 (36.3)	50 (17.6)	15 (0.4)	20 (7.0)	96 (33.8)	284 (100.0)	(0.000)
	 인제 있다				, ,			
세금면제,		65 (81.3)	(/	5 (38.5)	16 (59.3)	64 (51.6)	179 (59.1)	23.815***
요금할인	없다	15 (18.8)	30 (50.8)	8 (61.5)	11 (40.7)	60 (48.4)	124 (40.9)	(0.000)
	전체	80 (26.4)	59 (19.5)	13 (4.3)	27 (8.9)	124 (40.9)	303 (100.0)	
자립자금	있다	6 (28.6)	1 (11.1)	- 0(400.0)	-	-	7 (9.5)	13.582**
대여	없다	15 (71.4)	8 (88.9)	6(100.0)	6(100.0)	32(100.0)	67 (90.5)	(0.009)
	전체	21 (28.4)	9 (12.2)	6 (8.1)	6 (8.1)	32 (43.2)	74 (100.0)	(,
재활보조기	있다	8 (33.3)	1 (10.0)	-		1 (5.6)	10 (16.7)	8.320
구 교부	없다	16 (66.7)	9 (90.0)	3(100.0)	5(100.0)	17 (94.4)	50 (83.3)	(0.081)
' - '	전체	24 (40.0)	10 (16.7)	3 (5.0)	5 (8.3)	18 (30.0)	60 (100.0)	(0.001)
직업재활	있다	9 (40.9)	_	1 (14.3)	1 (7.7)	1 (3.7)	12 (14.3)	18.166***
및 훈련	없다	13 (59.1)	15(100.0)	6 (85.7)	12 (92.3)	26 (96.3)	72 (85.7)	(0.001)
× E E	전체	22 (26.2)	15 (17.9)	7 (8.3)	13 (15.5)	27 (32.1)	84 (100.0)	(0.001)
┃ 재활시설 ·	있다	2 (22.2)	-	-	_	_	2 (4.3)	8.596
세 글 세 글 세 글 세 글 세 글 세 글 세 글 세 글 세 글 세	없다	7 (77.8)	8(100.0)	3(100.0)	4(100.0)	22(100.0)	44 (95.7)	(0.072)
	전체	9 (19.6)	8 (17.4)	3 (6.5)	4 (8.7)	22 (47.8)	46 (100.0)	(0.072)
방문간호,	있다	11 (30.6)	_	-	_	1 (2.1)	12 (10.2)	23.667***
1 ' 1	없다	25 (69.4)	19(100.0)	7(100.0)	9(100.0)	46 (97.9)	106 (89.8)	
│ 가정간호 ·	전체	36 (8.5)	19 (16.1)	7 (5.9)	9 (7.6)	47 (39.8)	118 (100.0)	(0.000)
7174	있다	13 (35.1)	-	-	-	1 (2.5)	14 (13.9)	00.044
가정	없다	24 (64.9)	14(100.0)	4(100.0)	6(100.0)	39 (97.5)	87 (86.1)	22.211***
봉사원	전체	37 (36.6)	14 (13.9)	4 (4.0)	6 (5.9)	40 (39.6)	101 (100.0)	(0.000)
	있다	9 (23.1)	<u> </u>	1 (12.5)	1 (7.1)	5 (10.4)	16 (12.6)	7,000
지활병원 재활병원	없다	30 (76.9)	18(100.0)	7 (87.5)	13 (92.9)	43 (89.6)	111 (87.4)	7.069
	전체	39 (30.7)	18 (14.2)	8 (6.3)	14 (11.0)	48 (37.8)	127 (100.0)	(0.132)

0 필요한 복지서비스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장애수당에 대한 수요가 37.7%로 가장 컸고, 다음은 의료비 지원(31.5%) 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88>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2개 선택)

단위: 명, %

구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계
장애수당	100 (42.2)	77 (37.0)	21 (36.2)	28 (36.8)	139 (35.7)	365 (37.7)
교육비 지원	15 (6.3)	18 (8.7)	5 (8.6)	4 (5.3)	22 (5.7)	64 (6.6)
의료비 지원	80 (33.8)	69 (33.2)	17 (29.3)	28 (36.8)	111 (28.5)	305 (31.5)
세금면제, 요금할인	10 (4.2)	18 (8.7)	9 (15.5)	9 (11.8)	50 (12.9)	96 (9.9)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2 (0.8)	4 (1.9)	1 (1.7)	-	11 (2.8)	18 (1.9)
재활보조기구 교부	2 (0.8)	3 (1.4)	-	=	_	5 (0.5)
직업재활 및 훈련	4 (1.7)	6 (2.9)	-	1 (1.3)	10 (2.6)	21 (2.2)
재활시설 및 그룹홈	3 (1.3)	-	2 (3.4)	1 (1.3)	6 (1.5)	12 (1.2)
방문간호, 가정간호	7 (3.0)	4 (1.9)	1 (1.7)	1 (1.3)	10 (2.6)	23 (2.4)
가정봉사원	8 (3.4)	2 (1.0)	-	1 (1.3)	6 (1.5)	17 (1.8)
재활병원	3 (1.3)	3 (1.4)	1 (1.7)	1 (1.3)	8 (2.1)	16 (1.7)
주간, 단기 보호시설	1 (0.4)	3 (1.4)	_	1 (1.3)	3 (0.8)	8 (0.8)
장애인 택시, 셔틀	1 (0.4)	1 (0.5)	1 (1.7)	-	6 (1.5)	9 (0.9)
장애인 심부름센터	-	-	_	=	2 (0.5)	2 (0.2)
장애인체육관	-	-	_	-	2 (0.5)	2 (0.2)
자립생활센터	1 (0.4)	-	_	1 (1.3)	3 (0.8)	5 (0.5)
전 체	237 (100.0)	208 (100.0)	58 (100.0)	76 (100.0)	389 (100.0)	968 (100.0)

(2) 생활실태 및 취업

0 생활의 어려움

-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가구원으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3.72점으로 가장 컸고, 가족관 계상의 어려움 2.75점, 외출 제약 2.65점, 취업의 어려움 2.62점을 기록하였음.
-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관계상의 어려움이었음. 경제적 부담은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층의 경우가 3.96점으로 다른 계층보다 월등히 높았음. 가족관계상의 어려움 역시 3.95점인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층이 3.95점을 기록하였음. 즉,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원도 적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가구원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음.

<표 89>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가족의 부담정도 평균비교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일반 저소득	계	F값
N	174	253	53	80	443	1003	
경제적 부담	3.70	3.96	3.62	3.75	3.61	3.72	3.806**
외출 제약	2.70	2.71	2.57	2.58	2.62	2.65	.418
부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움	2.60	2.77	2.79	2.61	2.52	2.62	2.066
가족관계상의 어려움	2.72	2.95	2.88	2.81	2.61	2.75	3.617**

o 취업실태

-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중 취업자는 32.9%였음. 계층별로 살펴보면, 수급층의 경우는 13.1%에 불과 하였으며, 차차상위계층(48.3%)이나 차상위계층(43.8%)은 40%가 넘게 취업하고 있었음.
-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41.2%였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차차상위계층의 응답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과 일반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순이었음. 수급층의 경우는 27.4%만이 취업을 희망함. 응답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반응답자는 모두 40%를 밑도는 수준이 었으나,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본인은 이보다는 훨씬 높은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표 90>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취업유무

단위: 명, %

구 분	취업	미취업	계
수급가구	31 (13.1)	205 (86.9)	236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109 (35.7)	196 (64.3)	305 (100.0)
차상위계층	28 (43.8)	36 (56.3)	64 (100.0)
차차상위	43 (48.3)	46 (51.7)	89 (100.0)
일반 저소득	175 (36.5)	305 (63.5)	480 (100.0)
전 체	386 (32.9)	788 (67.1)	1,174 (100.0)

X2=58.637, p<.000

<표 91> 저소득층 가구 소득계층별 취업희망여부

단위: 명, %

구분	J	h족 응답:	자	장	애인응답	·자		전체	
丁世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수급가구	14	43	57	49	124	173	63	167	230
	(24.6)	(75.4)	(100.0)	(28.3)	(71.7)	(100.0)	(27.4)	(72.6)	(100.0)
최저생계 이하	25	65	90 (100.0)	110	105	215	135	170	305
비수급가구	(27.8)	(72.2)		(51.2)	(48.8)	(100.0)	(44.3)	(55.7)	(100.0)
차상위계층	7	18	25	18	18	36	25	36	61
	(28.0)	(72.0)	(100.0)	(50.0)	(50.0)	(100.0)	(41.0)	(59.0)	(100.0)
차차상위	12	19	31	32	25	57	44	44	88
	(38.7)	(61.3)	(100.0)	(56.1)	(43.9)	(100.0)	(50.0)	(50.0)	(100.0)
일반 저소득	62	110	172	141	145	286	203	255	458
	(36.0)	(64.0)	(100.0)	(49.3)	(50.7)	(100.0)	(44.3)	(55.7)	(100.0)
전 체	120	255	375	350	417	767	470	672	1143
	(32.0)	(68.0)	(100.0)	(45.6)	(54.4)	(100.0)	(41.2)	(58.8)	(100.0)
χ^2 (p값)	4.	306 (0.36	66)	27.9	907*** (0.0	000)	23.9	949*** (0.	000)

9.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o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중 가장 많은 아동복지서비스는 무료급식으로 78.1%였음. 다음은 학비지원(57.5%), 보육료 감면 및 보조(21.8%), 공부방(18.1%)의 순이었음. 다른 서비스는 이용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표 9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있다	없다	계
보육료 감면, 보조	166 (21.8)	595 (78.2)	761 (100.0)
아동상담프로그램	21 (2.8)	739 (97.2)	760 (100.0)
공부방	138 (18.1)	626 (81.9)	764 (100.0)
무료급식	599 (78.1)	168 (21.9)	767 (100.0)
학비 지원	440 (57.5)	325 (42.5)	765 (100.0)
예체능교실	24 (3.2)	735 (96.8)	759 (100.0)
문화활동	7 (0.9)	752 (99.1)	759 (100.0)
기타	3 (5.3)	54 (94.7)	57 (100.0)

o 필요 복지서비스

- 가장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는 학비지원이 32.3%, 무료급식 22.0%, 공부방 16.0%, 보육료 감면 및 보조 13.8% 등이었음.
- 미취학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어린이집'을 통한 주간보호 및 특별활동을 53.2%,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희망하였음. 즉 특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우선적으로 보호할 시설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음.
- 수급층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서는 공부방이 57.6%가 욕구가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취미나 기능교실도 33.8%나 원하고 있음.
-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서비스는 미취학자녀나 초등학생 자녀보다는 수요가 조금 분산되어 있음.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학과목 지도'로써 43.0%로 조사되었고, '학비 지원'(21.8%)과 '공부방, 독서실'(21.4%)의 수요도 높음. 이들을 살펴보면 모두 학습 혹은 성적과 관련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자녀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학습에 대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93> 기초생활수급가구 미취학 자녀 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82	53.2
한글 및 예체능교실	33	21.4
문화활동(연극, 견학, 캠프 등)	9	5.8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9	5.8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4	2.6
장애아 특별 프로그램	6	3.9
없음	8	5.2
기타	3	1.9
전 체	154	100.0

<표 94> 기초생활수급가구 초등학생 자녀 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공부방(학습지도, 특별활동)	203	57.6
취미, 기능교실	119	33.8
문화활동	12	3.4
아동청소년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3	0.9
없음	7	2.0
기타	8	2.3
전 체	352	100.0

<표 95> 기초생활수급가구 중고등학생 자녀 복지서비스 욕구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공부방, 독서실	103	21.4
학과목 지도	207	43.0
예체능 프로그램	11	2.3
문화활동 참여 지원	5	1.0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22	4.6
후견인 제도	9	1.9
학비 지원	105	21.8
취업알선, 직업훈련	13	2.7
검정고시 지도	1	0.2
기타	5	1.0
전 체	481	100.0

<표 96>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보육료 감면, 보조	209	13.8
아동상담프로그램	72	4.8
공부방	242	16.0
무료급식	333	22.0
학비 지원	489	32.3
예체능교실	117	7.7
문화활동	46	3.0
기타	5	0.3
전 체	1513	100.0

(2)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0 미취학자녀 양육

- 미취학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46.2%)이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없음'도 20.5%나 되었음.

<표 97>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미취학자녀 양육의 어려움

구 분	일반	가구	모부자, 소년소녀가장가구		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음	13	12.3	19	38.0	32	20.5
지역에 아이를 맡길 시설의 부족	12	11.3	3	6.0	15	9.6
밑고 맡길 보육시설의 질의 문제	4	3.8	1	2.0	5	3.2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	50	47.2	22	44.0	72	46.2
아동의 교육시설 부적응	1	0.9	1	2.0	2	1.3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5	4.7	3	6.0	8	5.1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시설의 부족	7	6.6	-	_	7	4.5
없음	13	12.3	1	2.0	14	9.0
기타	1	0.9	_	_	1	0.6
전 체	106	100.0	50	100.0	156	100.0

0 취학자녀 양육의 어려움

- 취학자녀의 경우는 '가정내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39.7%, '사교육비 과다 부담' 33.0%의 수준임. 가구형태별로 일반가구와 모부자/소년소녀가장가구의 1,2순위는 같았으나, 모부자/소년소녀가장가구가 '방과후 돌볼 사람이 없음'(11.2%)과 '자녀와의 갈등이나 양육기술의 부족'(10.2%)의 어려움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층의 초등학생 자녀는 방과 후에 '보호자와 함께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41.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사설학원'(14.8%)에 다니거나 '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14.5%) 등의 순이었음. 그러나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내는' 아이들도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우선적 서비스 지원이 요구됨.

<표 98> 기초생활수급가구 취학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

구 분	일반.	가구	모부자, 소년소녀가장가		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방과후 돌볼 사람이 없음	17	4.4	33	11.2	50	7.3
자녀와의 갈등이나 양육기술의 부족	28	7.3	30	10.2	58	8.5
가정내 학습지도의 어려움	156	40.4	114	38.6	270	39.7
사교육비 과다 부담	131	33.9	94	31.9	225	33.0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사회 환경	23	6.0	6	2.0	29	4.3
없음	21	5.4	9	3.1	30	4.4
기타	10	2.6	9	3.1	19	2.8
전 체	386	100.0	295	100.0	681	100.0

<표 99> 기초생활수급가구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활동

단위: 명, %

구 분	4AB	비율
사설학원에 다님	52	14.8
관공서나 기관의 공부방 이용	42	12.0
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51	14.5
집에서 과외를 받음	3	0.9
보호자와 함께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냄	146	41.6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냄	44	12.5
기타	13	3.7
전 체	351	100.0

2) 저소득층 가구

(1) 복지서비스 이용과 욕구

- 전체적으로 이용경험이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밝혀져 아동복지서비스의 이용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 중 162명(6.2%)이 이용한 보육료 감면 및 보조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았으며, 다음은 무료급식이었음 (155명).
- 소득계층별로는 보육료 감면 및 보조, 아동상담 프로그램, 공부방, 무료급식, 학비지원은 모두 수급층이 다른 계층과 큰 차이가 나게 이용율이 높았음. 반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예체능교실과 문화활동은 일반저소득층이 각각 1.8%(34명), 1.2%(24명)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

<표 100> 저소득층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

구 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일반저소득	계	メ² (p값)
보육료 감면,보조	있다	27 (31.4)	36 (16.2)	19 (15.7)	20 (7.8)	60 (3.1)	162 (6.2)	184.007***
	없다	59 (68.6)	186 (83.8)	102 (84.3)	238 (92.2)	1870 (96.9)	2,455 (93.8)	
	전체	86 (3.3)	222 (8.5)	121 (4.6)	258 (9.9)	1930 (73.7)	2,617(100.0)	
아동상담 프로그램	있다	9 (10.5)	3 (1.4)	4 (3.3)	-	7 (0.4)	23 (0.9)	*
	없다	77 (89.5)	219 (98.6)	117 (96.7)	258(100.0)	1,922 (99.6)	2,593 (99.1)	
	전체	86 (3.3)	222 (8.5)	121 (4.6)	258 (9.9)	1,929 (73.7)	2,616(100.0)	
공부방	있다	16 (18.6)	6 (2.7)	5 (4.1)	4 (1.6)	37 (1.9)	68 (2.6)	92.851***
	없다	70 (81.4)	216 (97.3)	116 (95.9)	254 (98.4)	1,893 (98.1)	2,549 (97.4)	
	전체	86 (3.3)	222 (8.5)	121 (4.6)	258 (9.9)	1,930 (73.7)	2,617(100.0)	
무료급식	있다	52 (60.5)	43 (19.4)	9 (7.4)	11 (4.3)	40 (2.1)	155 (5.9)	584.309***
	없다	34 (39.5)	179 (80.6)	112 (92.6)	247 (95.7)	1,890 (97.9)	2,462 (94.1)	
	전체	86 (3.3)	222 (8.5)	121 (4.6)	258 (9.9)	1,930 (73.7)	2,617(100.0)	
학비 지원	있다	32 (37.2)	20 (9.0)	6 (5.0)	9 (3.5)	31 (1.6)	98 (3.7)	309.143***
	없다	54 (62.8)	202 (91.0)	115 (95.0)	249 (96.5)	1,898 (98.4)	2,518 (96.3)	
	전체	86 (3.3)	222 (8.5)	121 (4.6)	258 (9.9)	1,929 (73.7)	2,616(100.0)	
예체능 교실	있다	-	_	1 (0.8)	1 (0.4)	34 (1.8)	36 (1.4)	*
	없다	86(100.0)	221(100.0)	120 (99.2)	257 (99.6)	1,894 (98.2)	2,578 (98.6)	
	전체	86 (3.3)	221 (8.5)	121 (4.6)	258 (9.9)	1,928 (73.7)	2,614(100.0)	
문화활동	있다		-		1 (0.4)	24 (1.2)	25 (1.0)	6.707 (.152)
	없다	86(100.0)	221(100.0)	121(100.0)	257 (99.6)	1,904 (98.8)	2,589 (99.0)	
	전체	86 (3.3)	221 (8.5)	121 (4.6)	258 (9.9)	1,928 (73.7)	2,614(100.0)	

o 필요 복지서비스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순서대로 살펴보면, 학비지원(20.9%), 보육료 감면 및 보조(19.6%), 공부방(17.3%)의 순이었음.
- 소득계층별 수요가 상이하여 수급층의 경우는 '학비지원'(30.1%)과 '무료급식'(25.3%)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고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과 차상위계층은 '학비지원'과 '보육료 감면 및 보조'의 수요가 높았음. 일반저소 득층은 상대적으로 '학비지원'과 '보육료 감면 및 보조'가 각각 19.4%와 19.3%로 조금 많았으나, 공부방(17.3%), 예체능교실(15.9%), 문화활동(12.5%)의 수요도 상당하였음.
- 미취학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서비스는 어린이집으로 40.0%였으며, 다음은 한글, 예체능교실이 었음(31.9%). 소득계층별로는 모두 어린이집의 수요가 가장 높았으나, 수급층의 경우 52.4%인 반면 일반저소득 층은 38.2%로 비율이 훨씬 작아짐. 2순위 역시 모두 한글, 예체능교실이었으나, 수급층은 19.0%, 일반저소득층 은 33.2%로 점차 늘어났음.
-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수요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취미, 기능교실로 42.2%이며, 공부방은 38.6%, 문화활동은 14.3%를 차지하고 있음. 계층별로는 수급층,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 차상위계층은 공부방의 수요가 각각 51.5%, 55.4%, 50.0%로 가장 많았으며, 차차상위계층과 일반저소득층의 경우는 취미, 기능교실이 공부방 보다 많은 46.3%, 43.6%로 조사되었음.
- 중고등학생 대상의 서비스 중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43.7%를 차지한 '학과목 지도'였음. 다음으로는 '공부방/독서실'이 18.4%, '학비 지원'이 16.8%를 차지하고 있음. 계층별로 살펴보면, 학과목 지도의 경우는 일반저소득층이 45.2%로 다른 계층보다 높은 수요를 보였고, '공부방/독서실'과 '학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과 차상위계층의 수요가 높았음. 한편,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 참여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저소득층이 다른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고 있음.

<표 101>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미취학자녀 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한글,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부모상담, 부모교육	장애아 특별 프로그램	없음	기타	계
수급가구	11 (52.4)	4 (19.0)	1 (4.8)	1 (4.8)	2 (9.5)	1 (4.8)	1 (4.8)	-	21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40 (49.4)	21 (25.9)	11 (13.6)	8 (9.9)	_	-	1 (1.2)	_	81 (100.0)
차상위계층	24 (43.6)	17 (30.9)	6 (10.9)	4 (7.3)	1 (1.8)	-	3 (5.5)	_	55 (100.0)
차차상위	46 (41.8)	33 (30.0)	19 (17.3)	5 (4.5)	3 (2.7)	1 (0.9)	1 (0.9)	2 (1.8)	110 (100.0)
일반 저소득	304 (38.2)	264 (33.2)	110 (13.8)	50 (6.3)	30 (3.8)	3 (0.4)	31 (3.9)	3 (0.4)	795 (100.0)
전 체	425 (40.0)	339 (31.9)	147 (13.8)	68 (6.4)	36 (3.4)	5 (0.5)	37 (3.5)	5 (0.5)	1,062 (100.0)

<표 102>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초등학생 자녀 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공부방	취미, 기능교실	문화활동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없음	기타	계
수급가구	17 (51.5)	11 (33.3)	1 (3.0)	2 (6.1)	2 (6.1)	_	33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62 (55.4)	31 (27.7)	13 (11.6)	4 (3.6)	1 (0.9)	1 (0.9)	112 (100.0)
차상위계층	32 (50.0)	28 (43.8)	4 (6.3)	_	_	_	64 (100.0)
차차상위	52 (40.3)	60 (46.5)	15 (11.6)	2 (1.6)	_	_	129 (100.0)
일반 저소득	321 (35.0)	400 (43.6)	147 (16.0)	28 (3.1)	21 (2.3)	_	917 (100.0)
전 체	484 (38.6)	530 (42.2)	180 (14.3)	36 (2.9)	24 (1.9)	1 (0.1)	1,255 (100.0)

<표 103>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중고등학생 자녀 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일반 저소득	계
공부방, 독서실	11 (21.6)	23 (23.2)	10 (23.3)	22 (22.0)	136 (16.9)	202 (18.4)
학과목 지도	22 (43.1)	37 (37.4)	14 (32.6)	43 (43.0)	365 (45.2)	481 (43.7)
예체능 프로그램	2 (3.9)	2 (2.0)	_	7 (7.0)	54 (6.7)	65 (5.9)
문화활동 참여 지원	1 (2.0)	1 (1.0)	1 (2.3)	2 (2.0)	67 (8.3)	72 (6.5)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2 (3.9)	9 (9.1)	4 (9.3)	4 (4.0)	60 (7.4)	79 (7.2)
후견인 제도	3 (5.9)	-	ı	_	3 (0.4)	6 (0.5)
학비 지원	9 (17.6)	27 (27.3)	14 (32.6)	21 (21.0)	114 (14.1)	185 (16.8)
취업알선, 직업훈련	_	_	ı	1 (1.0)	5 (0.6)	6 (0.5)
검정고시 지도	1 (2.0)	-	-	_	2 (0.2)	3 (0.3)
기타	_	-	_	_	1 (0.1)	1 (0.1)
전 체	51 (100.0)	99 (100.0)	43 (100.0)	100 (100.0)	807 (100.0)	1,100 (100.0)

<표 104>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2개 선택)

단위: 명, %

구분	보육료 감면,보조	아동상담 프로그램	공부방	무료급식	학비지원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기타	계
수급가구	25 (15.1)	11 (6.6)	28 (16.9)	42 (25.3)	50 (30.1)	5 (3.0)	5 (3.0)	_	166 (100.0)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92 (21.5)	35 (8.2)	74 (17.3)	66 (15.4)	112 (26.2)	23 (5.4)	26 (6.1)	_	428 (100.0)
차상위계층	56 (23.9)	25 (10.7)	35 (15.0)	35 (15.0)	49 (20.9)	22 (9.4)	12 (5.1)	-	234 (100.0)
차차상위	98 (19.8)	40 (8.1)	94 (19.0)	41 (8.3)	124 (25.0)	56 (11.3)	43 (8.7)	_	496 (100.0)
일반 저소득	722 (19.3)	320 (8.5)	648 (17.3)	262 (7.0)	726 (19.4)	596 (15.9)	470 (12.5)	6 (0.2)	3,750 (100.0)
전 체	993 (19.6)	431 (8.5)	879 (17.3)	446 (8.8)	1061 (20.9)	702 (13.8)	556 (11.0)	6 (0.1)	5,074 (100.0))

X2=218.885, p<.000

(2) 자녀양육의 어려움

- 저소득층가구의 미취학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문제(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의 질의 문제'(14.4%), '아이를 맡길 시설부족'(14%)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수급층의 경우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24%)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었음.
- 취학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 과다부담의 문제로 전체의 59.1%가 이를 지적하였음. 계층별로 는 모두 '사교육비 과다 부담'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나, 수급층의 경우는 31.5%인 반면, 일반저소득층은 64.4%였음. 반대로, 2순위인 '가정내 학습지도의 어려움'은 수급층은 30.1%인데 비해 일반저소득층의 경우는 13.6%로 줄어들었음.
-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으로는 77.2%가 사설학원에 다닌다고 하였음. 계층별로 매우 차이가 있었는데,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이 사설학원에 다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소득계층별로 그 비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수급층은 36.4%인 반면, 일반저소득층은 85.9%로 점차 소득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한편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내는 경우도 수급층의 경우 15.2%, 차상위계층의 경우 20.3%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105>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미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일반 저소득	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음	5 (23.8)	10 (12.0)	6 (10.9)	12 (10.9)	87 (10.9)	120 (11.2)
지역에 아이를 맡길 시설의 부족	1 (4.8)	14 (16.9)	9 (16.4)	14 (12.7)	113 (14.1)	151 (14.1)
밑고 맡길 보육시설의 질의 문제	1 (4.8)	10 (12.0)	10 (18.2)	10 (9.1)	123 (15.4)	154 (14.4)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	9 (42.9)	41 (49.4)	24 (43.6)	63 (57.3)	341 (42.6)	478 (44.7)
아동의 교육시설 부적응	-	3 (3.6)	2 (3.6)	2 (1.8)	19 (2.4)	26 (2.4)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	1 (1.2)	2 (3.6)	2 (1.8)	34 (4.3)	39 (3.6)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시설의 부족	-	-	-	1 (0.9)	6 (0.8)	7 (.7)
없음	5 (23.8)	4 (4.8)	2 (3.6)	6 (5.5)	76 (9.5)	93 (8.7)
기타	-	-	-	-	1 (0.1)	1 (0.1)
전 체	21 (100.0)	83 (100.0)	55 (100.0)	110 (100.0)	800 (100.0)	1,069 (100.0)

<표 106>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계	
l 판	1 日/11	비수급가구	계층	MM611	저소득	/ II	
방과후 돌볼 사람이 없음	6	19	12	22	77	136	
경기구 글글 자임이 따금 	(8.2)	(11.1)	(14.3)	(11.7)	(5.5)	(7.1)	
자녀와의 갈등, 양육기술의 부족	9	24	5	18	149	205	
사더파의 설등, 상표기설의 구독 	(12.3)	(14.0)	(6.0)	(9.6)	(10.7)	(10.8)	
기저네 하스카드이 집러으	22	39	15	37	189	302	
가정내 학습지도의 어려움	(30.1)	(22.8)	(17.9)	(19.7)	(13.6)	(15.9)	
사교육비 과다 부담	23	72	46	93	894	1,128	
^^교육이 와이 구급 	(31.5)	(42.1)	(54.8)	(49.5)	(64.4)	(59.2)	
양육에 적합하지않은	5	2	2	6	17	32	
지역사회환경	(6.8)	(1.2)	(2.4)	(3.2)	(1.2)	(1.7)	
없음	7	12	3	11	62	95	
W 급	(9.6)	(7.0)	(3.6)	(5.9)	(4.5)	(5.0)	
기타	1	3	1	1	1	7	
714	(1.4)	(1.8)	(1.2)	(0.5)	(0.1)	(0.4)	
전 체	73	171	84	188	1,389	1,905	
인 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7> 저소득층 소득계층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활동

단위: 명, %

구분	수급가구	최저생계 이하 비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일반 저소득	계
	12	40	33	95	786	966
사설학원에 다님	(36.4)	(36.4)	(51.6)	(73.6)	(85.9)	(77.2)
관공서나 기관의 공부방 이용	2 (6.1)	9 (8.2)	3 (4.7)	1 (.8)	16 (1.7)	31 (2.5)
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4 (12.1)	4 (3.6)	3 (4.7)	1 (0.8)	17 (1.9)	29 (2.3)
집에서 과외를 받음	-	1 (0.9)	1 (1.6)	1 (0.8)	8 (0.9)	11 (0.9)
보호자와 함께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냄	9 (27.3)	41 (37.3)	10 (15.6)	23 (17.8)	67 (7.3)	150 (12.0)
보호자 없이 집에서 보냄	5 (15.2)	12 (10.9)	13 (20.3)	8 (6.2)	15 (1.6)	53 (4.2)
기타	1 (3.0)	3 (2.7)	1 (1.6)	-	6 (0.7)	11 (0.9)
전 체	33 (100.0)	110 (100.0)	64 (100.0)	129 (100.0)	915 (100.0)	1,251 (100.0)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간지)

- 인쇄소 디자인

제2장 저소득층 복지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1절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제2절 복지분야별 추진과제 제3절 복지공급 주체별 역할과 추진과제

저소득층 복지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1절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1.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

1)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많음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기본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이 현재 미흡함.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가구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및 장애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음.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상자 선정의 이러한 한정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이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2) 서울의 지역 특성이 배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음. 조사결과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 중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는 가구가 많음.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가구의 경우 자가나 전세금이 재산기준을 상회하여 배제되고 있음. 주거도 음식처럼 생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의 고비용 거주를 감안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이 필요함. 주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생활물가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 따라서 서울거주 저소득층은 절대적 생활수준이나 상대적 생활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3) 소득계층별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수준도 현재 미흡하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만 집중되어 있음. 즉 수급자로 선정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이 전부(all), 또는 완전배제(nothing)가 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계층별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복지 서비스 기준 및 제공이 필요함.

2) 추진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실제 부양여건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선정함.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게 완화함.

(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현재 일률적인 전국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서울시 주거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서울시 여건에 맞는 별도의 기초생활보장이 요구됨. 즉 서울시 최저생계기준을 고려한 부가급여 도입 등으로 서울형 기초생 활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3) 소득계층유형별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 제공

소득계층 유형별로 제공되어야하는 복지서비스 지침을 작성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세분화하여 제공해야함.

2. 복지 접근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1)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인지도와 이용율 저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과반수 정도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소 득층 주민의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율이 낮음. 인지율이 낮은 만큼 복지시설 이용률이 낮아서, 기초수급 가구의 20%만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음. 그 외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10% 내외에 머뭄. 복지서비스 이용률도 기초수급가구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저조함.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를 제외하고는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를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이 1년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음. 수급자 신청과 선정이 본인 신청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 제도상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접근성은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으로 직접 연계되는 것임. 조사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가구는 실제 도움이 되었다고 함. 서비스가 필 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적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로 재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과제

(1) 소생활권 및 동 단위의 종합복지센터 구축

저소득층의 복지정보 및 서비스 접근 용이성을 위해서는 동 및 소생활권 단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저소득층 복지 수요자 및 긴급 지원 가구를 파악하고, 복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복지종합 센터를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동이나 소생활권 단위로 구축함.

(2) 복지전문인력 확대

저소득층 시민에게 적극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원칙을 기준으로 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적정 인구수를 산출함. 이 기준에 맞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보함.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자치구간 격차 완화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달려있음. 2006년에는 자치구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서 저소득층 복지행정의 축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수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결정적임. 자치구의 재정, 노력도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큼. 서울시 또는 서울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운영지침, 정보제공, 자치구간 연계 등의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역할을 함.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정보제공을 통해 자치구간 저소득층 복지서비스가 상향 균등화되도록 지원함.

(4) 보건 및 복지행정체계 연계 및 원스톱(one-stop) 복지 서비스 제공

조사결과 보건의료서비스가 저소득층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나타났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야함.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복지행정 체계 연계가 필요함. 가령 사회복지사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보건소나 병원으로 연계, 또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함. 복지 전달체계는 저소득층이 원스톱 방식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구축함.

(5)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의료기관의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저소득 복지와 관련해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공공직업훈련시설, 보건소, 시립병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복지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이 수익성, 경영평가에 치중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등한시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실천 가능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은 공공복지시설이나 보건의료시설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임.

3. 복지 생산성, 건전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1)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최저 생계이하 미수급 가구의 노동능력 취약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의 인구특성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저학력 노인 및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기본적으로 이들 계층 대상의 근로참여지원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등은 한계가 있음.

(2) 불안정한 고용구조 상태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계층 가구주의 경우 약 90%가 일을 하며, 가구원 취업률도 10-15% 수준임. 그러나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자영업이 많음.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식하거나, 실직/사업실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실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인적 자본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희박함.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노동시장을 통한 고용지원책은 한계가 있음.

(3) 공공취업알선 기능의 약화

저소득계층의 취업상태는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임시직/일용직이 많음. 따라서 이들에겐 반복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취업정보가 중요함. 조사결과 기초수급가구를 제외하고는 공공 취업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저소득층은 매우 적었음. 저소득층은 직업훈련보다는 취업알선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음.

2) 추진과제

(1) 복지와 노동 행정이 연계된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된 복지행정과 노동행정이 연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연계하여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취업과 복지서비스를 일 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2) 맞춤형 자립지원사업 실시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자립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매개로 하여 개인별로 저소득층 취업, 직업훈련, 자활,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3) 자활 공동체사업 확대

자활과 관련해 저소득층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었음. 1인 또는 가족 자영업을 하는 가구가 많음. 기존에 자영업을 하다 실패한 경우도 많음. 창업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도 약 30% 수준에 이름. 그러나 최근 소규모 자영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실패의 위험부담이 큼. 따라서 노인, 장애인, 여성가구주, 중장년 남성 등 집단별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자활공동체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4. 예방적, 보편적 복지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1) 긴급구호 사업 미비

조사결과 질병/장애/사고로 인해 생활이 빈곤해졌다는 가구가 많음. 그리고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가구가 많음. 현재 가구주의 급작스런 질병과 장애, 사업실패, 장기실직에 대한 긴급구호 사업이 미비함.

(2) 저소득층 주거복지 미흡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약 1/3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의 57%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 3% 정도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 서울의 주거 고비용으로 저소득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나 가구 소비지출에서 주거비 지출이 10% 이상임. 특히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8%임.

(3) 가구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과대 지출

조사결과 일반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49%를 차지함.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식료품비 42%, 주거비가 18%를 차지함. 이러한 소비지출구조하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최저생계이하 미수급가구의 경우 1년 동안 극장 및 각종 문화시설을 한번도 관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들 가구의 가구소비지출에서 교양오락비는 1%이며 한달 약 6,500원 정도임. 문화여가활동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일반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비지출의 약 4%가 교양오락비이나 도시 전가구 월평균 약 1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만원임.

2) 추진과제

(1) 보건소 및 시립병원의 저소득층 대상 보건의료사업 강화 및 확대

저소득층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로 나타났음. 일반가구가 가구주나 가구원의 질병 및 장애로 빈곤해지거나, 또는 저소득층 빈곤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방적 복지차원에서 보건의료 긴급구호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함. 보건소가 현재 저소득층의 일차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립병원은 일반시민이나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 의료구호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주거 안정사업 확대

최저한의 주거수준에 살 수 있는 최저 주거권 보장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업 확대가 필요함.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3) 교육지원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 양호한 시설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함.

(4) 여가문화 생활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사회생활 참여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함.

제2절 복지분야별 추진과제

1. 주거복지

1)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때 주택가격이 매우 높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및 주거급여액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최저생계비의 지역적 구분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시키도록 하고,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RIR를 고려하여 월세 보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영구임대주택의 공가 부족으로 인해 공공(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ㅇ 이상과 같은 지원은 목표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두고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RIR이 30%를 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가구에 대해서 는 주거급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국민)임대주택에 입주시키도록 하고, 입주하지 못한 2인 이상 가구와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RIR를 고려하여 월세 보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ㅇ 이상과 같은 지원은 목표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두고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추진과제

(1) 공공임대주택 확장과 차등화된 임대료 부과 시스템 도입

- 서울시는 2001년~2012년에 공공임대주택 15.5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계획이 완료될 시점에는 전체 주택재고량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10%에 도달 할 것임.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시장의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 물리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유형화하기보다는 입주민의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특정한 자격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이 외 에는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를 부과하는 운영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2) 임대료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주거급여
 - 가구구성 및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최저주거비를 계측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생계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되는 주거현금급여의 경우에는 주거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쿠폰제도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 보증금의 크기와 함께 가구의 규모나 부담능력, 최저주거기준 충족 또는 미달 여부 등을 반영하여 수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국민주택기금 운용액에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수혜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
 - 임대보증금 융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뿐만 아니라 일정금 이하의 보증부월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월세 보조는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복지대상 계층 정보수집과 관리 구축

- 향후 국민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5만호 정도로 확대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 운영이 중요함.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주자 선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책대상계층 선정이 중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발 및 운영이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향후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료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서도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필수적임. 특히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료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책대상 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4) 서울시 주택재원 확보

- ㅇ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주택재원 확보가 필요함.
- 서울시의 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첫째,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재정비사업 추진시, 업무용 건축물 신축시 개발부담금의 일부 확보, 둘째, 서울시SH공사의 주택분양시 건설비와 분양가와의 차액을 주택기 금으로 확보, 셋째, 재건축사업 단지에서 개발이익환수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상의 이익금 확보 등을 들 수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규모나 소요비용 면에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특히 저소득층 주택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으로, 앞으로 임대료 보조 등 간접지원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으로부터 지원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는 정책방향 정립과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집행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정책사안별로 국가의 지원 하에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재원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책임범위와 재정분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노인복지

1)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층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 높음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비율이 각각 66%, 52%로 저소득층 문제의 상당부분이 노인빈곤의 문제와 중복되어 있음을 보여줌.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 대해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지원(경로연금,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음.

(2)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 저조

특히 비수급층 가구의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아서 현재 노인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수급자 중심으로 제 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저소득층 노인 대상 취업지원 필요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층가구 노인의 40%, 차상위계층의 54%가 현재 일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근로나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취업상태를 보이고 있음.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함.

(4)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보호 욕구 증가

수급층의 75%,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의 59%가 요보호노인에 대한 도움장소로 복지시설을 희망하여 시설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재가보호 희망시에도 희망도움제공자로 무급자원봉사원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62%, 40%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저조

여가활동에 관련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은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2) 추진과제

(1)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 미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은 서울시 자체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 보호되고 있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지원 확대 필요함. 또 한 무료급식, 물품지원 등 비급여 형식의 지원과 독거노인 결연사업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지원을 모색해야 함.

(2) 노인 요양보호시설 확충

치매, 중풍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현재의 시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 위주의 무료요양시설이 대부분이어서 비수급가구의 일반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3) 방문간호,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 재가서비스 확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을 우선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함. 또한 노인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예: 교통서비스, 주택개조 등)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야 함.

(4) 저소득 노인 취업기회 확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할 의사를 가진 노인을 위한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확대 운 영하고 취업알선 및 교육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5) 노인 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복지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노인의 '삶의 질'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양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3. 장애인복지

1) 현황과 문제점

(1) 소득 낮을수록 장애율 높음.

저소득층 가구의 장애출현율은 총 2.9%이며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장애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저소득층 가구의 1.5%만이 장애인가구인데 비해 수급자가구의 16.7%,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가구의 6.3%가 장애인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음.

(2) 장애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 수발 가구의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임. 장애인들은 치료 재활 서비스, 교통수단 이용, 특수 교육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어서 경제적 부담이 큼. 현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등이 되고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아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본 조사에서도 가구 내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장애수당과 의료비 지원요구가 가장 많았음.

(3)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

장애인가구원을 수발하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외에도 경제적인 활동의 제한에 대한 부담이 큼.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주단기보호시설, 방문간호, 가정도우미 등의 재가서비스는 가족들의 수발부담을 덜어줄 뿐 만 아니라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도 할 것임.

(4) 장애인 취업지원

모든 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장애유형, 중증

도에 따라 취업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 필요함. 조사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24.7%로 현재 취업률 (9.3%)을 고려할 때 취업을 원하는데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상당수준 있음을 의미함.

2) 추진과제

(1)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혹은 추가 의료급여 지급

장애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 중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외의 저소득측 가구, 특히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수당을 확대지급하거나 장애인 가족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2) 장애유형별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작업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시설이 요구됨. 현재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집단 이외의 다른 장애유형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크게 부족함.

(3) 장애인 주 • 단기보호시설 확대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함. 특히 학령기 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방과후 교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4) 재가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검진, 투약,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는 방문간호 및 가정 간호에 대한 재가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는 높은데 비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 급대상 노인들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저소득층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함.

(5)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

장애아동 부모의 보육부담들 덜어주고 조기교육 확대를 위한 장애아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시설에서 비장애아동과 통합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자치구 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사순회 프로그램이나 일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 보육관련 교육 등 현재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이 필요함.

4. 저소득층 아동복지

1)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층가구의 보육서비스 요구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의 절반정도만이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시간제보육, 연장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함. 이용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공립어린이집(3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현재 이용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20%)보다 민간시설(30%)나 유치원(33%)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줌.

(2) 초등생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방과후 보호하고 적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음. 저소득층 가구의 초등생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방과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아동 (77%)이 방과후 활동으로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음. 관공서나 기관의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5%), 수급층의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도 15%나 되었음.

(3)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서비스 요구

취학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학과목지도와 공부방, 독서실 등 학습과 관련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 득층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학습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줌.

2) 정책과제

(1) 구립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요구됨.

(2)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장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등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구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등을 확대해나가야 함.

(3) 방과후프로그램 확충

현재 일부 복지관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확대 실시가 필요함. 방과후 교실을 취미, 특기교실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다양한 취미, 특기교육에 대한 욕구를 함께 충족 시킬 수 있음.

(4)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및 교육지원

현재 복지관, 청소년 회관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부방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의 확대실시가 요구됨. 또한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한적인 학비보조 이외에 대학입학시 장학금, 사설학원 이용시 학원비 보조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중에서도 조손가정과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더욱 취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지역사회내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웃리치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결연, 후원사업 등 민간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제3절 복지 공급 주체별 역할과 추진과제

1. 서울시

1) 자치구 여건별 고려한 복지재정 지원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6년부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자치구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저소 득층을 비롯한 행정복지의 축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동하게 됨. 서울시는 자치구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복 지재정 지원을 하되,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을 함.

2) 복지 및 노동, 보건의료 행정 연계의 구심점 역할

저소득층 복지는 복지, 노동, 보건의료, 교육 등의 행정부서간 업무 네트워크가 필요하나, 현재 업무네트워크 및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복지행정의 축이 자치구로 이동되면서,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된 행정부서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더 중요해질 것이나,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수행하기는 어려움. 서울시가 행정부서간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3) 저소득층을 목표집단으로 하는 공공 복지시설 및 보건의료기관 운영

서울시가 운영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의 주 목표집단을 저소득층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설 및 기관평가를 하도록 함.

4)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법제도 개정 중앙정부 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선정 및 지원 기준 등과 같이 법제도가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함.

2. 자치구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향후 자치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자치구는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

2) 지역자원 개발과 독자적인 저소득층 복지사업 실시

자치구는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실시함.

3. 서울복지재단

- 1) 자치구 교류지원사업의 매개역할 자치구별 저소득층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와 좋은 사례 공유를 위한 매개역할을 함.
- 2) 저소득층 이용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관 평가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관 평가를 함.